

2024 - 현안 - 01

인천교육-2024-0261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중기 사업 추진 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 문영진(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 연구위원)

협력연구원 : 김대성(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장학사)

연구보조원 : 김효은(성북초등학교 교사)

최혜인(반지초등학교 교사)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기획조정관
교육정책연구소

- ※ 이 연구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의 연구지원비로 수행되었으며,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정책 대안이나 의견 등은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공식 의견이 아니라 본 연구진(팀)의 견해임을 밝혀둡니다.
- ※ 이 연구보고서 파일은 다음의 주소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https://ice.go.kr> - 교육 - 교직원지원 - 교육정책연구소)

연구 요약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인천시교육청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지하고 2024년 1월 전국 최초로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을 신설하였음. 중점 과제로 1) 교육활동 보호 지원 체제 강화, 2) 교육활동 침해 대응 원스톱 지원 시스템 강화, 3) 교육활동 침해 예방·치유·회복 지원 내실화, 4) 교육활동 보호 상호존중 문화 조성을 설정하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교육활동 보호는 단순히 교원의 지위 향상에만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님. 교실 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는 학급 내 전체 학생들의 학습활동 보호로 이어지고, 학교의 교육활동 보호는 학교 전체 학생들의 학습활동 보호로 이어짐.
-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운영되는 한시기구임. 그러나 교육활동 보호 정책은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에서는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의 중기 사업 추진 방안을 탐색하였음.
- 본 연구는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음.
 - 첫째, 교육활동보호담당관 및 교육활동 보호 정책에 대한 교원의 인식과 요구는 어떠한가?
 - 둘째, 교원의 인식 및 요구 분석을 통해 도출한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의 중기 사업 추진 방안은 무엇인가?

2. 연구 내용 및 방법

가. 연구 내용

- 본 연구는 2가지 내용으로 구성함. 첫째는 교육활동보호담당관 및 교육활동 보호 정책에 대한 교원의 인식과 요구 분석임. 이를 위해 인천 관내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주요 내용은 1) 교육활동 침해 실태와 인식, 2) 교육활동보호담당관 및 현행 교육활동 보호 정책에 대한 인식과 요구, 3)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보호 관련 정책 요구조사임.
- 두 번째 연구 내용은 설문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의 중기 사업 추진 방안을 탐색하는 것임. 방안의 타당성과 현실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담당부서와 협의회를 실시하였음.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방안을 보완하였고, 1)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의 현행 중점 과제 강화 방안과 2)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교원 요구 기반 신설 사업 추진 방안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음.

나. 연구 방법

- 연구 방법은 크게 3가지를 활용하였음. 첫째는 문헌분석으로, 관련 선행연구 분석, 인천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을 비롯한 16개 시도교육청의 교육활동 보호 관련 정책 및 사업, 해외 국가(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일본, 캐나다, 미국, 호주, 싱가포르)의 관련 정책을 살펴보았음. 문헌분석 결과는 설문조사 문항을 개발하는 데 활용하였음.
- 둘째는 설문조사임. 설문조사는 교육활동보호담당관 및 교육활동 보호 관련 정책에 대한 교원의 인식과 요구를 분석하기 위해 실시하였고, 인천 관내 교원(유·초·중·고·특수학교)을 대상으로 학교 단위 모집단의 15%를 랜덤추출하였음. 주요 내용은 1) 교육활동 침해 실태와 인식, 2) 교육활동보호담당관 및 현행 교육활동 보호 정책에 대한 인식과 요구, 3)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보호 관련 정책 요구조사로 구성함. 교육청 설문조사 시스템을 활용하여 온라인조사로 진행하였고, 기간은 2024년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실시함. 분석 방법은 빈도분석과 대응표본 t-검정, Borich 요구도 및 The Locus for Focus 모델을 활용함.

- 셋째는 전문가 협의회임. 이때 전문가는 담당부서의 팀장 및 업무담당자로, 협의회는 주목적은 중기 사업 추진 방안(안)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며, 설문조사지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서도 실시하였음. 협의회는 대면으로 1회 실시하였고, 조사지 검토를 위한 서면 자문을 1회 실시함.

3. 연구 결과

가. 교육활동보호담당관 및 교육활동 보호 정책에 대한 교원 인식과 요구 분석

-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의 중기 사업 추진 방안을 탐색하기 위하여 교육활동보호담당관 및 교육활동 보호 정책에 대한 교원의 인식과 요구를 살펴보고, 주요 내용별 설문조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학교 내 교육활동 침해의 심각성에 대해 응답 교원의 약 55.4%(934명, ‘심각하다’와 ‘매우 심각하다’ 응답자 합계)가 심각하다고 응답하였음. 5점 척도에서는 평균 3.52로 나타나 교육활동 침해의 심각성에 대한 교원의 인식은 보통 수준으로 확인됨.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교원의 인식(M=3.71)이 가장 높았고, 교직경력에서는 11~15년 사이 교원의 인식(M=3.74)이 가장 높았음. 이에 반해, 가장 낮은 인식은 5년 이하 저경력 교원(M=3.41)으로 나타남.
- 교육활동 침해 주체로는 학부모(53.0%)가 학생(41.6%)보다 많았음. 주목할 만한 점은 유, 초, 특수학교 교원의 경우 학부모를 선택한 교원이 많은 데 반해, 중, 고등학교 교원은 학생을 선택한 교원이 많았음. 한편, 교육활동 침해 경험(서술형)에서는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침해 행위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20.8%)’으로 나타났음.
- 교육활동 보호 교육 및 침해 경험에 대한 인식 분석 결과, 법정 의무연수를 제외하고, ‘최근 1년 이내 “교육활동 보호” 관련 교육 또는 연수를 받은 적이 있다’에 응답한 교원은 약 73.3%(1,234명)로 확인됨. 또한 최근 1년 이내 “교육활동 침해” 사례를 듣거나 본 적이 있는 교원은 약 86.3%(1,453명), 최근 1년 이내 “교육활동 침해”를 한 번 이상 받은 적이 있는 교원은 약 46.3%(779명)이었음. 덧붙여,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M=4.20)’이 가장 높게 나타남.

- 둘째, 교육활동보호담당관 및 현행 교육활동 보호 정책과 관련하여, 응답 교원의 약 59.1%(995명)가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을 알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주목할 만한 점은 직위별 응답 결과에서 교장·교감의 경우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을 알고 있는 경우가 95%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교사는 약 53.6%만이 알고 있다고 응답한 점임. 교직경력에서도 15년 이하 교원은 과반수 이상이 몰랐다고 응답하였고, 비담임교사보다 담임교사의 ‘알고 있다’ 응답률이 저조하였음.
-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을 알고 있는 교원을 대상으로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의 효용성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 5점 척도에서 평균 3.55로 나타나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의 효용성은 보통 수준이었음. 그러나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의 지속적 운영에 대한 필요성은 평균 4.21로 나타남.
- 현 정책에 대한 요구도 분석 결과, 교원들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때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과 사후지원의 강화에 대해서 높은 요구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됨. 이에 반해, 예방적 차원에 해당하는 중점 과제들은 상대적으로 요구도가 높게 나타나지 않았음.
- 셋째,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보호 관련 정책에 대한 요구 분석 결과, ‘교사들의 교육활동 전념을 위한 행정업무 경감 및 업무 정상화’, ‘교사의 안정과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활동 대체 인력풀 활성화’, ‘교육활동 침해 학생과 보호자의 특별교육 내실화’,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확대’가 최우선 요구사항으로 도출됨.
- 해외사례 및 타 시도교육청 정책에 대한 요구도 분석 결과, 교원들은 ‘학교 변호사 제도(46.6%)’를 가장 많이 요구하였음. 이어 녹음기 보급, 휴대용보호장비, 비상벨 구축 등 ‘교원 보호시스템 강화(16.9%)’, ‘정서행동위기학생 및 문제행동학생 지도를 위한 전문인력 지원(14.3%)’ 등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음. 이외에 추가적인 요구사항(서술형)으로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법과 제도 마련(12.6%)’이 1순위로 나타났고, ‘전체 학부모 또는 학생 대상 교육활동 보호 교육 실시(11.2%)’, ‘교권침해 학부모 또는 학생 처벌 및 재발 방지 교육 실시(10.2%)’ 등의 순으로 확인됨.

나.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중기 사업 추진 방안

- 설문조사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의 중기 사업 추진 방안을 크게 2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함.
- 첫 번째는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의 현행 중점 과제 강화 방안으로, 1) 특이(악성)민원 사안 대응 강화, 2)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 강화, 3) 교육활동 침해 학생과 보호자의 특별교육 내실화, 4)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확대를 제안함.
- 두 번째는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교원 요구 기반 신설 사업 추진 방안으로, 1) (예방)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색있는 교육프로그램 개발, 2) (대응) 교원 보호시스템 강화, 3) (사후지원) 사안 처리 이후 단위학교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제시함.

〈표 요약-1〉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중기 사업 추진 방안

방안	세부 내용
현행 중점 과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이(악성)민원 사안 대응 강화 •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 강화 • 교육활동 침해 학생과 보호자의 특별교육 내실화 •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확대
신설 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방)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색있는 교육프로그램 개발 • (대응) 교원 보호시스템 강화 • (사후지원) 사안 처리 이후 단위학교 모니터링 체계 구축

4. 연구 제언

가. 정책 제언

- 첫째,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시적 조직이 아닌 공식 조직으로 재편해야 함. 교육활동 보호는 사실상 문화적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이어져야 하는 속성을 가지기 때문에 3년간의 한시적 운영으로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문화를 조성하기 어려움. 현재 조례에 근거하여 한시적으로 운영되어야 하지만, 3년 후에는 교육활동 보호 전담기구를 공식조직 내 재편하는 것이 필요함. 아울러, 교육활동보호담당관에 대한 교사들의 낮은 인지도를 고려하여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함.
- 둘째,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하여 정책 재구조화가 요구됨. 현재 교육활동보호담당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은 중점과제 4가지에 예방, 대응, 사후지원이 섞여 있어 분절적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으며, 백화점식 나열 형태보다 통합하여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예컨대, ‘거버넌스 구축 및 환경 조성-예방-대응-사후지원’과 같이 일련의 체계적 접근으로 현재 사업들을 재구조화하고, 하위에 유사한 사업들을 통합하여 그 수를 줄이고 사업별 지원을 강화하는 것임.
- 또한, 교육청 내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한 사업들을 모두 종합한 “(가칭) 인천 교육활동 보호 종합계획” 수립이 필요함. 교육활동 보호는 그 특성상 업무 경계가 모호하고, “교육활동 보호”라는 용어에 다양한 활동들이 포함될 수 있음. 이에 관계 부서들과의 공식적인 협의 체계 구축을 통해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셋째, 교육활동 보호 정책 및 사업이 학교 현장과 해당 교원 등에 대하여 어떻게 구현되는지 그 과정에 대한 피드백 체계가 요구됨.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의 정책 및 사업은 수혜자가 “교원”이라는 명확한 특징이 있기에, 수혜자를 대표할 수 있는 인천 관내 교원단체 및 조직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 현장 교원 대상 상시 모니터링, 정례적 요구조사를 통한 상향식 정책 추진, 현장 피드백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직·간접적인 정책·사업의 평가 및 환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특히, 교육활동보호담당관뿐만 아니라 교육지원청의 사안 처리 과정 및 학교 현장에 대한 밀착 지원 노력 등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이 요구됨.

- 한편, 본 연구에서는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장기적인 방향을 모색하지 못한 한계가 있음. 교육활동 보호는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함. 즉 개별적인 사안처리를 넘어 보다 근본적으로 단위학교의 교육활동 보호, 교육공동체 회복 지원 등 문화 조성 관점에서의 정책과 지원이 필요함.

나. 후속연구 제언

- 첫째, 앞선 정책 제언에 기초하여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의 정책 재구조화를 위한 기초연구가 필요함. ‘거버넌스 구축 및 환경 조성-예방-대응-사후지원’과 같이 일련의 체계적 접근으로 현재 사업들을 재구조화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탐색할 수 있을 것임. 이와 함께, 교육청 내 교육활동 보호 관련 유사 정책 통합 및 조정을 위해 관련 사업들을 조사하여 통합하는 방향을 탐색할 필요가 있음.
- 둘째, 교육활동 침해를 겪은 피해교원 대상의 맞춤형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수행이 필요함. 피해교원이 일상으로 돌아와 교단에 다시 서기 위해서는 충분한 치유와 회복 과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피해교원 개인에 대한 통합 진단과 지원이 필요함. 따라서 교육청 내 지원서비스를 비롯하여 유관기관을 파악한 후 ‘진단-지원-사후모니터링’에 따른 일련의 체계를 구축해나가는 기초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 셋째, 학교급별, 교직경력별 등 교원의 배경변인별 맞춤형 정책 마련을 위한 질적 요구분석이 필요함. 설문조사 결과에서 유치원 및 특수학교 교사들의 요구사항과 저경력 교사들의 요구사항 등이 다른 집단의 요구사항과 다소 상이하였는데, 후속연구에서 심층면담을 통한 질적 요구분석을 통해 초점있는 지원 정책 마련이 필요함.

I	서론 _ 3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 내용 및 방법	5
	3. 선행연구 분석	7
II	교육활동보호담당관 및 교육활동 보호 정책에 대한 교원 인식 및 요구 분석 _ 15	
	1. 분석 개요	15
	2. 분석 결과	18
	3. 소결	42
III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중기 사업 추진 방안 탐색 _ 47	
	1. 교육활동보호담당관 현행 중점 과제 강화	47
	2.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교원 요구 기반 신설 사업 추진	52
IV	결론 및 제언 _ 57	
	1. 결론	57
	2. 제언	59
	참고문헌 _ 62	
	부록 _ 63	

〈표 Ⅰ-1〉 최종 의사결정에 따른 추진 과제	8
〈표 Ⅰ-2〉 교육주체별 역량 강화 방안	9
〈표 Ⅰ-3〉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정책 추진 방안	9
〈표 Ⅱ-1〉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정보	16
〈표 Ⅱ-2〉 교육활동 침해의 심각성	19
〈표 Ⅱ-3〉 교육활동 침해의 주체(교육활동 침해가 심각하다고 응답한 교원)	21
〈표 Ⅱ-4〉 교육활동 침해 경험(유경험자, 서술형)	23
〈표 Ⅱ-5〉 교육활동 보호 교육 및 침해 경험	24
〈표 Ⅱ-6〉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유형별 발생 가능성	24
〈표 Ⅱ-7〉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설치 및 운영 인지도	26
〈표 Ⅱ-8〉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의 효용성	27
〈표 Ⅱ-9〉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지속적 운영의 필요성	29
〈표 Ⅱ-10〉 「2024 인천 교육활동 보호 시행계획」 중점 과제 Borich 요구도 분석	30
〈표 Ⅱ-11〉 「2024 인천 교육활동보호 시행계획」 중점 과제 요구도 우선순위 분석	32
〈표 Ⅱ-12〉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보호조치 Borich 요구도 분석	35
〈표 Ⅱ-13〉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보호조치 요구도 우선순위 분석	36
〈표 Ⅱ-14〉 교육활동보호담당관에서 추진하기를 희망하는 사업(1순위)	39
〈표 Ⅱ-15〉 교육활동보호담당관에서 추진하기를 희망하는 사업(서술형)	40
〈표 Ⅲ-1〉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중기 사업 추진 방안	47

[그림 I-1] 2024 인천 교육활동보호 시행 계획 요약 4

[그림 II-1] 「2024 인천 교육활동 보호 시행계획」 중점 과제 The Locus for Focus 모델 결과 32

[그림 II-2]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보호조치 The Locus for Focus 모델 결과 36

[그림 III-1]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대상 맞춤형 통합지원 체계(안) 51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3. 선행연구 분석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그동안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을 강화하는 조치는 지속되었으나,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사의 권리 보호와 학생 지도 권한은 상대적으로 균형 있게 보장받지 못했고, 다양한 지도 불응 및 수업 방해 행위에 대한 대응 제도가 미흡하다는 문제의식 하에, 2022년 12월 27일 교육부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정부 차원의 방안 마련이 무색하게도 2023년 7월 서울 한 초등학교에서 20대 교사의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로부터 1년이 넘게 지난 현재까지도 교원들의 교육활동은 여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인천교사노동조합(이하 인천교사노조)은 2024년 6월 27일부터 7월 3일까지 故 서이초교사 사건 이후 인천교사의 인식 변화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故 서이초교사 사건 이후에도 학생 및 보호자에 의한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정도에 대하여 참여교원의 89%가 심각하다(매우 심각하다 45%, 심각하다 44%)고 응답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한 교사들의 고통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심각해지는 이유에 대하여 교원들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법적 제재의 미흡(39%)’과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학생 및 보호자의 인식 부족(33%)’을 가장 많이 꼽았다. 즉 교원들이 생각하는 교육활동 보호의 실효성은 법적 장치 마련과 인식 개선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법 개정은 사회적 합의가 우선해야 하고, 인식 개선은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어려운 점이라는 한계가 있다.

이에 인천시교육청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지하고 2024년 1월 전국 최초로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을 신설하였다. 중점 과제로 1) 교육활동 보호 지원 체제 강화, 2) 교육활동 침해 대응 원스톱 지원 시스템 강화, 3) 교육활동 침해 예방·치유·회복 지원 내실화, 4) 교육활동 보호 상호존중 문화 조성을 설정하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

고 있다. 그러나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운영되는 한시기구이기에 교육활동 보호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비전	교육활동보호로 상호존중하는 행복한 교육공동체 구현	
슬로건	선생님 곁에 늘 가까이, 따뜻하고 세심한 지원으로 더 가까이	
중점과제	① 교육활동보호 지원 체제 강화	② 교육활동 침해 대응 원스톱 지원 시스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교육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지원 □ 교원보호공제 보장내역 확대 □ 교육활동보호 현장자문단 운영 □ 교육활동 침해 특별교육 이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활동보호 법률지원 강화 □ 교원 치유회복 심리상담 및 치료 지원 □ 원스톱 지원 신청 홈페이지 운영 □ 교원대상 아동학대 신고사안 대응 □ 교권침해 관련 특이(악성)민원 사안 대응
	③ 교육활동 침해 예방·치유·회복 지원 내실화	④ 교육활동보호 상호존중 문화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찾아가는 교육활동보호 교실 운영 □ 교육활동보호 역량강화 연수 운영 □ 교육활동보호 교육자료 개발·보급 □ 다채움 치유 회복 프로그램 운영 □ 교육공동체 교원온شم표 공모사업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활동보호 상호존중 주간 운영 □ 교원 존중 문화 조성 사업 추진 □ 교육활동보호 정책 협의체 운영 □ 교육활동보호 소통 간담회 운영 □ 교육활동보호 홍보 자료 제작 배부

[그림 1-1] 2024 인천 교육활동보호 시행 계획 요약

출처 :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담당관(2024).

교육활동 보호는 단순히 교원의 지위 향상에만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다. 교실 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는 학급 내 전체 학생들의 학습활동 보호로 이어지고, 학교의 교육활동 보호는 학교 전체 학생들의 학습활동 보호로 이어진다. 즉 학교 구성원 중 교원이라는 한 주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 구성원들을 위한 것이다. 이에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이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 이후에 교육활동 보호 정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관련 정책을 준비하는 과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간 교육활동 보호 관련 연구는 계속되어 왔다. 연구를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와 의견들이 종합되어 교육활동 보호 정책이 수립되는데, 현재 교육활동보호담당관에서도 각종 의견조사와 연구를 통해 도출된 요구들을 정책화하여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요구 중에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준비해야 하는 과제들이 있다. 또한 인적·물적 자원의 한계로 채택되지 못한 요구들도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육활동보호담당관 및 교육활동 보호 정책에 대한 교원의 인식과 요구를 토대로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의 중기 사업 추진 방안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교육활동보호담당관 및 교육활동 보호 정책에 대한 교원의 인식과 요구는 어떠한가?

둘째, 교원의 인식 및 요구 분석을 통해 도출한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의 중기 사업 추진 방안은 무엇인가?

2. 연구 내용 및 방법

가. 연구 내용

본 연구는 2가지 내용으로 구성된다. 첫째는 교육활동보호담당관 및 교육활동 보호 정책에 대한 교원의 인식과 요구 분석이다. 이를 위해 인천 관내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요 내용은 1) 교육활동 침해 실태와 인식, 2) 교육활동보호담당관 및 현행 교육활동 보호 정책에 대한 인식과 요구, 3)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보호 관련 정책 요구조사이다.

두 번째 연구 내용은 설문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의 중기 사업 추진 방안을 탐색하는 것이다. 방안의 타당성과 현실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담당부서와 협의회를 실시하였다.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방안을 보완하였고, 최종적으로 1)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의 현행 중점 과제 강화 방안과 2)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교원 요구 기반 신설 사업 추진 방안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현행 중점 과제 강화 방안으로는 1) 특이(악성)민원 사안 대응 강화, 2)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 강화, 3) 교육활동 침해 학생과 보호자의 특별교육 내실화, 4)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확대를 제안하였다. 신설 사업 추진 방안으로는 1) (예방)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색있는 교육프로그램 개발, 2) (대

응) 교원 보호시스템 강화, 3) (사후지원) 사안 처리 이후 단위학교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제시하였다.

나. 연구 방법

연구 방법은 크게 3가지를 활용하였다. 첫째는 문헌분석으로, 관련 선행연구 분석, 인천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을 비롯한 16개 시도교육청의 교육활동 보호 관련 정책 및 사업 분석, 해외 국가(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일본, 캐나다, 미국, 호주, 싱가포르)의 관련 정책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설문조사 문항을 개발하는 데 활용하였다.

둘째는 설문조사이다. 설문조사는 교육활동보호담당관 및 교육활동 보호 관련 정책에 대한 교원의 인식과 요구를 분석하기 위해 실시하였고, 인천 관내 교원(유·초·중·고·특수학교)을 대상으로 학교 단위 모집단의 15%를 랜덤추출하였다. 주요 내용은 1) 교육활동 침해 실태와 인식, 2) 교육활동보호담당관 및 현행 교육활동 보호 정책에 대한 인식과 요구, 3)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보호 관련 정책 요구조사로 구성하였다. 교육청 설문조사 시스템을 활용하여 온라인조사로 진행하였고, 기간은 2024년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실시하였다. 분석 방법은 빈도분석과 대응표본 t-검정, Borich 요구도 및 The Locus for Focus 모델을 활용하였다.

셋째는 전문가 협의회이다. 이때 전문가는 담당부서의 팀장 및 업무담당자로, 협의회는 주목적은 중기 사업 추진 방안(안)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며, 설문조사지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서도 실시하였다. 협의회는 대면으로 1회 실시하였고, 조사지 검토는 서면으로 1회 실시하였다.

3. 선행연구 분석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교육 현장의 높은 요구에 비해 관련 정책에 관하여 시도교육청 수준에서 수행한 연구는 많지 않은 편이다. 심지어 2019년 충남교육정책연구소에서 이슈브리프 형태로 발간한 연구보고서를 제외하면, 2022년에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 2023년에 대전, 제주, 전남교육정책연구소에서 각각 1편씩 수행되어 비교적 최근에서야 교육활동 및 교권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인천 역시 2022년에 정소민 외(2022)의 「학교구성원의 교육활동(교권) 보호 인식에 관한 탐색적 연구」가 수행되었다.

공통적으로 이들 연구는 인식 조사 및 사례 조사 등을 중심으로 수행되었고, 일부는 정책 방안을 제안하거나 정책적 방향 설정에 대하여 제언하였다. 본 연구가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정책 방안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단순 인식 및 사례 조사를 진행한 연구는 제외하고 정책 방안을 제시한 연구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연구구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김소현 외(2022)는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경기도 내 교사, 학생, 보호자(학부모)의 인식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주체별 역량 강화 방안과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탐색하였다. 연구 결과로 도출된 방안을 살펴보기에 앞서, 이 연구에서는 교육주체의 인식 조사 중 한 부분으로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보호조치에 대한 교사와 보호자(학부모) 대상의 요구 분석을 실시하였다. 요구 분석은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도출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보호조치 관련 11개 항목에 대해 중요도와 실행도를 조사하고, Borich 요구도 분석과 The Locus for Focus(LFF) 모델을 활용하여 우선순위를 파악, 최종 의사결정을 통해 추진 과제를 도출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11개 항목은 1) 교육활동 침해 학생 징계처분, 2)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보호자에 대한 조치, 3)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등, 4) 사안 발생 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및 심의, 5)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학교 및 교원의 자율적 권한 확보, 6) 국가 및 교육청의 교육활동 보호 노력과 홍보, 7) 학교공동체의 교육활동 보호(교권) 이해교육과 지원체제 확보, 8) 학생, 보호자, 교사 등 학교 내 협력적 상생관계, 9) 「아동학대처벌법」 등 다른 법률과의 명확한 관계 설정, 10) 예방-치유-재발방지 등 교육활동 보호 one-stop 서비스 제

공, 11) 학칙 제정의 정당성 확보와 엄격하고 일관된 학칙 적용이다.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Borich 요구도 분석과 The Locus for Focus(LFF) 모델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교사의 경우 1), 2), 3), 6), 11)이 상위 우선 항목으로, 학부모는 2), 3), 6), 10)이 상위 우선 항목으로 도출되었다. 11개 항목에 대한 우선순위, 차순위, 미순위 항목들을 종합하여 최종 의사결정을 통해 도출한 추진 과제는 <표 I-1>과 같다.

<표 I-1> 최종 의사결정에 따른 추진 과제

구분		내용	비고
최종 채택	최우선순위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보호자에 대한 조치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등 국가 및 교육청의 교육활동 보호 노력과 홍보 	우선순위-우선순위
	차우선 과제(I)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칙 제정의 정당성 확보와 엄격하고 일관된 학칙 적용 「아동학대처벌법」 등 다른 법률과의 명확한 관계 설정 	우선순위-차순위, 차순위-차순위
	차우선 과제(II)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활동 침해 학생 징계처분 예방-치유-재발방지 등 교육활동 보호 one-stop 서비스 제공 	우선순위-미분류
최종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안 발생 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및 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학교 및 교원의 자율적 권한 확보 학교공동체의 교육활동 보호(교권) 이해교육과 지원체제 확보 학생, 보호자, 교사 등 학교 내 협력적 상생관계 	차순위-미분류, 미분류-미분류

출처 : 김소현 외(2022 : 75).

요구도 분석 결과를 포함한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교육주체 인식 분석을 비롯하여, 이 연구에서는 교육활동 침해를 직접적으로 경험한 피해 교사, 간접적으로 접한 업무 담당 교사,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한 사례 조사, 그리고 전문가 협의회 등을 거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주체별 역량 강화 방안과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주체별 역량 강화 방안은 1) 학생 성장단계별 교육활동 보호 방안, 2) 학교급별 학부모 교육 방안, 3) 교사 성장주기에 기반한 연수 방안으로 구분된다. 방안별 세부 내용은 <표 I-2>와 같다.

〈표 1-2〉 교육주체별 역량 강화 방안

구분	방안	내용
학생 성장단계별 교육활동 보호 방안	1	• 각종 폭력과 침해 관련 예방교육을 통폐합하여 효율성 제고 - 학교급별 통합 운영 프로그램 개발 및 사례 학교 발굴 및 제시
	2	•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학생 성장 단계에 맞는 인권 감수성 교육 강화
	3	• 학교급에 맞는 학교구성원의 갈등 관리 역량 강화 및 지원
	4	• 학생 성장 단계에 맞는 예방교육의 내용 및 전달 방식 제고 필요
학교급별 학부모 교육 방안	1	•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된 법령 이해 교육 활성화 및 홍보 강화
	2	• 자녀의 발달 단계에 따른 학부모 교육 체계화 필요
	3	• 지역 내 교육기관과 연계한 학부모 교육 내실화
교사 성장주기에 기반한 연수 방안	1	• 교육활동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사 성장주기별 맞춤형 연수 개발
	2	•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학교장 연수 강화
	3	• 교사 성장주기별 다양한 힐링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확대
	4	• 학생들의 정서 행동 및 언어문화에 대한 이해 및 대응 교육

출처 : 김소현 외(2022 : 161~164의 표 재구성).

다음으로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 방안들은 행정지원, 사전 예방과 사후대응의 범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세부 내용은 <표 1-3>과 같다.

〈표 1-3〉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정책 추진 방안

방안	범주	내용
1	행정 지원	• 교사들의 교육활동 전념을 위한 행정업무 경감 및 업무 정상화
2		• 교사의 안정과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활동 대체 인력풀 활성화
3	사전 예방	• 교권과 학생 인권이 상호 보장되는 인권 친화적이고 민주적인 학교 문화 조성 노력 - 학교장의 교육활동 보호 책무성 강화 노력 - 학기 초 교육공동체의 학교 규칙 교육 주간 확대
4		• 위기학생의 범위 확대 및 지원 강화 - 고위험군 학생 심리진단 및 상담 비용 지원 확대
5		• 학교 및 지역사회 이해가 높은 갈등 조정 전문 인력풀 구축 및 정기적인 질 관리
6		• 아동학대, 학생인권 관련 적절한 대처를 위한 판례와 매뉴얼 보급
7		•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8		•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된 교육청과 국가의 홍보 및 노력 필요

방안	범주	내용
9	사후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활동 침해 학생과 보호자의 특별교육 내실화 - 침해학생 특별교육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 평가 강화 - 특별교육기관의 학생·학부모 1인당 특별교육 비용 현실화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활동 침해 교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확대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활동 침해 시 대응을 위한 One-stop 시스템 및 긴급 지원팀 확대 운영 - 교권보호지원센터의 인력 확충을 통한 One-stop 시스템 기능 확대

출처 : 김소현 외(2022 : 161~164의 표 재구성).

다음으로 이지혜 외(2023)는 대전지역을 중심으로 선행연구 및 정책 자료 분석(이론적 배경 탐색), 교육활동 침해 경험이 있는 피해 교사 대상 면담(사례 분석), 대전 관내 전체 교원 대상 교육활동 침해 및 대응 실태·인식 조사(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전 교육활동 보호 정책의 강화 방안을 탐색(현장 의견 수렴 및 전문가 협의회)하였다. 현장 의견 수렴 과정에서는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대응, 학생의 문제행동 조치, 교권보호위원회 기능 정상화,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회복 지원 강화 등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어 전문가 협의회에서는 교권보호 4법을 포함하여 정부와 교육청이 내놓은 교육활동 보호 정책,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사안에 대한 법률 지원, 대전교육청의 교직원-관리자-교육지원청으로 이어지는 민원대응 정책, 교원 학생생활지도 고시의 학칙 적용,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 우리나라 교권하락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과 대책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상을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결론을 교육활동 보호 정책과 제도의 정비 측면, 교육주체들의 교육활동 침해 이해 역량 강화 측면으로 제시하였다. 먼저 교육활동 보호 정책과 제도의 정비 측면에서는 1) 교육활동 침해가 한 개인의 신체와 정신에 지대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임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대처 방안 마련, 2) 교육활동 보호 정책들이 학교 현장에 적용되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융통성 있게 수정·발전, 3) 교육활동 보호 정책이 현장 교원을 위한 실제적인 안전망으로 기능하기 위한 적절한 인적·물적 지원 수반, 4)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운영 한계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기능 재정비, 5) 학교급별 교육활동 침해 양상을 파악하고 학교 맥락에 맞는 차별적인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책 마련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교육주체들의 교육활동 침해 이해 역량 강화 측면에서는

1) 학교 관리자의 교육활동 보호 역량 강화, 2) 전체 교원 대상의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이해 및 대응 교육과 함께 교원의 마음건강 지원 활성화, 3) 학생 및 학부모 대상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재발 방지 교육 강화, 4) 현 교육활동 보호 정책에 대한 학부모의 공감 및 인식 변화 유도 노력이 제시되었다.

김경혜(2023)는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학교 구성원의 인식 조사를 분석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과 제도적 차원, 교육청 차원, 학교 구성원 차원으로 구분하여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먼저 법과 제도적 차원에서는 1)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교원이 할 수 있는 생활지도의 범위를 법으로 보장, 2) 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보호자의 책임 강화, 3) 교육활동 보호 관련 조례 정비를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교육청 차원에서는 1)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 조사 필요, 2) 수업 방해나 교원의 지도에 불응하는 학생들에 대한 원인 분석을 통한 맞춤형 지원 필요, 3) 피해교원에 대한 지원 강화, 4) 평소 교원들의 스트레스 관리 지원 필요, 5) 교권보호위원회 운영 재구조화, 6) 학교 구성원별 맞춤형 역량 강화 필요, 7) 교육활동 보호 예방 차원의 지원 강화, 8) 학교 구성원의 인식 개선을 위한 장 마련 및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홍보 강화를 제시하였다. 끝으로, 학교 구성원 차원에서는 1)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체계적 지원 필요, 2) 학교 민원 사항에 대한 공동 대처 필요, 3) 전문적학습공동체를 통해 학급에서 생기는 어려움을 공유하는 자리 필요, 4) 교육활동 보호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학교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논의와 소통의 장 필요를 제시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각 지역에 속한 교원,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수행되었기에 공통된 인식과 정책 대응 방향이 유사할 수 있지만, 인천지역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여기에서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정소민 외(2022)는 인천지역을 대상으로 학교구성원의 교육활동(교권) 보호 인식을 살펴보았지만 이는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이 신설되기 전에 수행된 연구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24년 1월 출범한 교육활동보호담당관 및 교육활동 보호 정책에 대한 교원의 인식과 요구를 살펴보려고 하였다.

II

교육활동보호담당관 및 교육활동 보호 정책에 대한 교원 인식 및 요구 분석

1. 분석 개요
2. 분석 결과
3. 소결

II

교육활동보호담당관 및 교육활동 보호 정책에 대한 교원 인식 및 요구 분석

1. 분석 개요

본 연구는 교육활동보호담당관 및 교육활동 보호 정책에 관한 교원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인천시교육청 소속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24년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교육청 설문조사 시스템을 활용하여 온라인조사로 진행하였다. 총 1,696명이 설문조사에 응답하였으며, 사례가 매우 적은 수석교사(4명)와 각종학교 교원(9명)은 분석에서 제외하였고, 분석에 활용된 사례 수는 총 1,683명이다.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를 배경변인(학교급, 설립유형, 성별, 직위, 교직경력, 담임여부)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학교급별 응답자는 유치원 67명(4.0%), 초등학교 834명(49.6%), 중학교 397명(23.6%), 고등학교 331명(19.7%), 특수학교 54명(3.2%)으로 구성되어 있다. 설립유형에 따라 국·공립은 1,496명(88.9%), 사립은 187명(11.1%)이며, 남성은 560명(33.3%), 여성은 1,123명(66.7%)이다. 직위별로 살펴보면, 교장은 84명(5.0%), 교감은 128명(7.6%), 교사는 1,471명(87.4%)이다. 교직경력의 경우 5년 단위로 나누어 살펴보면, 5년 이하 259명(15.4%), 6~10년 170명(10.1%), 11~15년 188명(11.2%), 16~20년 218명(13.0%), 21~25년 347명(20.6%), 26~30년 193명(11.5%), 31년 이상 308명(18.3%)이다. 담임교사는 983명(58.4%), 비담임교사는 700명(41.6%)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정보는 <표 II-1>과 같다.

〈표 II-1〉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정보

구분		빈도(명)	백분율(%)
전체		1,683	100.0
학교급	유치원	67	4.0
	초등학교	834	49.6
	중학교	397	23.6
	고등학교	331	19.7
	특수학교	54	3.1
	소계	1,683	100.0
설립유형	국·공립	1,496	88.9
	사립	187	11.1
	소계	1,683	100
성별	남성	560	33.3
	여성	1,123	66.7
	소계	1,683	100
직위	교장	84	5.0
	교감	128	7.6
	교사	1,471	87.4
	소계	1,683	100.0
교직경력	~5년	259	15.4
	6~10년	170	10.0
	11~15년	188	11.2
	16~20년	218	13.0
	21~25년	347	20.6
	26~30년	193	11.5
	31년~	308	18.3
	소계	1,683	100.0
담임여부	담임	983	58.4
	비담임	700	41.6
	소계	1,683	100.0

조사지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크게 세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첫 번째 영역은 교육활동 침해 실태 및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교원들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내용이다. 이때,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서 정의하는 공무 및 업무 방해, 모욕 및 명예훼손, 상해 및 폭행, 성

적 굴욕감 및 혐오감, 성폭력 범죄, 손괴(어떤 물건을 망가뜨림), 정당한 교육활동의 부당한 간섭, 정보통신망 이용 불법 정보 유통 등을 의미한다. 영역은 구체적으로 교육활동 침해의 심각성, 교육활동 침해의 주체, 교육활동 침해 경험(서술형), 교육활동 보호 교육 및 침해 경험,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유형별 발생 가능성 등의 문항을 포함한다. 교육활동 침해 경험에 관한 문항은 서술형 응답을 주제별로 범주화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두 번째 영역은 교육활동보호담당관 및 현행 교육활동 보호 정책에 대한 교원들의 인식과 요구를 파악하기 위한 내용이다. 이는 인천시교육청에서 2024년 1월 신설한 교육활동보호담당관과 관련하여 설치 및 운영 인지도, 효용성, 지속적 운영의 필요성 등의 문항을 포함한다. 그리고 「2024 인천 교육활동보호 시행계획」 중점 과제에 대한 요구도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요구도 분석은 현재 수준(what is)과 도달해야 할 수준(what should be)의 차이를 분석하는 것으로, 요구분석 차원에서 t-검정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Borich의 요구도 공식이 활용된다(조대연, 2009). 본 연구에서는 Borich의 요구도 공식¹⁾을 활용하여 현재 수준(인지도·수행도)과 바람직한 수준(중요도)의 차이를 비교하고 항목의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또한, The Locus for Focus 모델²⁾을 활용하여 좌표평면에 항목의 위치를 표현하였다. 이후 The Locus for Focus 모델의 1사분면(High-High분면)에 속한 항목의 개수를 확인하고, 그 개수만큼 Borich 요구도의 상위 순위 개수를 결정하였다. 마지막으로 Borich의 요구도 공식의 상위 순위 항목과 The Locus for Focus 모델의 1사분면에 위치한 항목을 비교하여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항목을 정책의 우선순위로 제시하였다.

1) Borich 요구도 분석은 역량의 중요도와 보유도 차이를 확인하여 그 차이가 큰 것을 우선순위로 두는 방법으로, Borich 요구도 분석의 공식(권순형, 2015 : 291)은 아래와 같다. 수식에서 중요도와 보유도는 응답자의 인식으로 각각 본인이 해당 역량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와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응답한 것이다(김도기 외, 2016 : 449 재인용).

$$\text{요구도} = \frac{\sum(\text{중요도} - \text{보유도})}{N} \times \text{중요도평균}$$

2) The Locus for Focus 모델은 역량의 중요도를 X축으로, 중요도와 보유도의 차이를 Y축으로 하는 그래프를 통해 각 사분면에 있는 역량들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제1사분면에 위치한 역량들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제3사분면에 위치한 역량들은 최하위로 고려하게 된다. 그러나 The Locus for Focus 모형의 결과는 제1사분면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은 비교적 용이하나, 2순위 분면을 제2사분면으로 할지, 제4사분면으로 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윤소희 외, 2013, 김도기 외, 2016 : 499 재인용).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The Locus for Focus 모델의 제1사분면에 위치한 정책의 수만큼 Borich 요구도 순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세 번째 영역은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보호 관련 정책에 대한 요구를 확인하기 위한 내용이다. 전반적인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보호조치에 대한 요구도 분석과 타 시도교육청 및 해외 국가들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활동 보호 관련 정책 및 사업 중 교육활동보호담당관에서 추진하기를 희망하는 사업을 조사하였다. 구체적으로 16개 시도교육청의 정책 및 사업과 해외 국가(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일본, 캐나다, 미국, 호주, 싱가포르)의 관련 정책 중 인천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담당관에서 하지 않고 있는 정책과 사업을 추출하여 문항을 구성하였다. 이외에 추가 의견이 있을 경우 서술형으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주제별로 범주화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2. 분석 결과

가. 교육활동 침해 실태 및 인식

1) 교육활동 침해의 심각성

본 연구에서는 교육활동 침해의 실태 및 인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먼저 교원들은 교육활동 침해에 관해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느끼는지 조사하였다. 전체 응답을 보면, ‘매우 심각하다’와 ‘심각하다’는 응답이 934명(55.4%)으로 과반을 차지하였고, ‘심각하지 않다’와 ‘전혀 심각하지 않다’는 268명(16.0%)으로 나타났다. 교육활동 침해의 심각성에 대한 교원 인식의 평균값은 3.52(5점 척도)로 보통 수준이었다.

평균을 기준으로 배경변인별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교원의 인식 수준이 평균 3.71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어 특수학교(M=3.59), 중학교(M=3.51), 유치원(M=3.22), 고등학교(M=3.11) 순을 보였다. 설립유형별로는 국·공립 교원(M=3.60)이 사립 교원(M=2.88)보다, 성별에서는 여교원(M=3.57)이 남교원(M=3.43)보다 교육활동 침해의 심각성을 높게 인식하였다.

직위별로는 교장(M=3.55), 교사(M=3.52), 교감(M=3.48) 순으로 나타났다. 교직경력에서는 11년~15년 사이의 교원의 인식이 평균 3.74로 가장 높은 반면, 5년 이하 교원의 인식이 평균 3.4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담임여부에서는 담임인 교원(M=3.58)이 비담임 교원(M=3.43)보다 교육활동 침해의 심각성을 높이 인식하였다. 교육활동 침해의 심각성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 II-2>와 같다.

〈표 II-2〉 교육활동 침해의 심각성

단위 : 명(%)

구분	항목	전혀 심각하지 않다	심각하지 않다	보통이다	심각하다	매우 심각하다	전체	평균 (표준편차)
전체		82 (4.9)	186 (11.1)	481 (28.6)	642 (38.1)	292 (17.3)	1,683 (100.0)	3.52 (1.054)
학교급	유	5 (7.4)	14 (20.9)	15 (22.4)	27 (40.3)	6 (9.0)	67 (100.0)	3.22 (1.112)
	초	32 (3.8)	68 (8.2)	202 (24.2)	340 (40.8)	192 (23.0)	834 (100.0)	3.71 (1.030)
	중	10 (2.5)	39 (9.8)	143 (36.0)	149 (37.6)	56 (14.1)	397 (100.0)	3.51 (.939)
	고	33 (10.0)	58 (17.5)	108 (32.6)	105 (31.7)	27 (8.2)	331 (100.0)	3.11 (1.100)
	특	2 (3.6)	7 (13.0)	13 (24.1)	21 (38.9)	11 (20.4)	54 (100.0)	3.59 (1.073)
설립 유형	국·공립	61 (4.1)	147 (9.8)	404 (27.0)	600 (40.1)	284 (19.0)	1,496 (100.0)	3.60 (1.030)
	사립	21 (11.2)	39 (20.9)	77 (41.2)	42 (22.5)	8 (4.2)	187 (100.0)	2.88 (1.022)
성별	남	32 (5.7)	75 (13.4)	175 (31.3)	176 (31.4)	102 (18.2)	560 (100.0)	3.43 (1.106)
	여	50 (4.5)	111 (9.9)	306 (27.2)	466 (41.5)	190 (16.9)	1,123 (100.0)	3.57 (1.025)
직위	교장	4 (4.8)	7 (8.3)	22 (26.2)	41 (48.8)	10 (11.9)	84 (100.0)	3.55 (.974)
	교감	7 (5.5)	11 (8.6)	43 (33.6)	48 (37.5)	19 (14.8)	128 (100.0)	3.48 (1.027)
	교사	71 (4.8)	168 (11.4)	416 (28.3)	553 (37.6)	263 (17.9)	1,471 (100.0)	3.52 (1.061)
교직 경력	~5년	17 (6.6)	29 (11.2)	87 (33.6)	83 (32.0)	43 (16.6)	259 (100.0)	3.41 (1.094)
	6~10년	12 (7.0)	19 (11.2)	45 (26.5)	60 (35.3)	34 (20.0)	170 (100.0)	3.50 (1.142)
	11~15년	7 (3.7)	16 (8.5)	42 (22.3)	77 (41.0)	46 (24.5)	188 (100.0)	3.74 (1.040)
	16~20년	11 (5.0)	25 (11.5)	56 (25.7)	92 (42.2)	34 (15.6)	218 (100.0)	3.52 (1.048)
	21~25년	13 (3.7)	36 (10.4)	106 (30.5)	136 (39.3)	56 (16.1)	347 (100.0)	3.54 (1.003)

구분	항목	전혀 심각하지 않다	심각하지 않다	보통이다	심각하다	매우 심각하다	전체	평균 (표준편차)
	26~30년	7 (3.6)	19 (9.8)	70 (36.3)	69 (35.8)	28 (14.5)	193 (100.0)	3.48 (.979)
	31년~	15 (4.84)	42 (13.6)	75 (24.4)	125 (40.6)	51 (16.6)	308 (100.0)	3.50 (1.072)
담임 여부	담임	44 (4.5)	100 (10.2)	265 (27.0)	385 (39.2)	189 (19.2)	983 (100.0)	3.58 (1.049)
	비담임	38 (5.4)	86 (12.3)	216 (30.9)	257 (36.7)	103 (14.7)	700 (100.0)	3.43 (1.055)

2) 교육활동 침해의 주체

다음으로, 앞선 문항에서 교육활동 침해가 심각하다고 응답한 교원(‘심각하다’와 ‘매우 심각하다’에 응답한 교원)을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의 주체가 주로 누구였는지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교육활동 침해 주체는 학부모(53.0%), 학생(41.6%), 기타(5.4%)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급의 경우, 유치원(90.9%)과 초등학교(63.0%), 특수학교(56.3%)는 학부모가 더 많았으며, 중학교(61.5%)와 고등학교(61.4%)는 학생이 더 많았다. 국·공립교원은 학부모(53.8%)를, 사립교원은 학생(56.0%)을 더 많이 선택하였다. 남성은 학생(46.4%), 학부모(48.6%)의 응답이 비슷했고, 여성은 학생(39.6%)보다 학부모(54.9%)를 더 많이 꼽았다.

교장은 학부모(76.5%)를 학생(21.6%)보다 훨씬 더 많이 선택하였고, 교감과 교사는 학부모(52.2%, 51.6%)를 더 많이 선택하였다. 교직경력에 따르면, 5년 이하 교원은 학생 응답이 50.0%, 학부모 응답이 38.1%로 나타났으며, 이를 제외한 모든 교직경력에서 학부모 응답이 학생 응답보다 높았다. 담임교사와 비담임교사 모두 학부모(54.2%, 51.1%)를 학생(40.1%, 44.2%)보다 더 많이 꼽았다.

한편, 기타 응답으로는 ‘학생과 학부모 모두’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그 외에 관리자, 동료교사, 교육부 및 교육청, 기타 직원(방과후 강사, 교육공무직) 등이 있었다. 이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의 주체는 주로 학생 또는 학부모이며, 학생과 학부모가 모두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사례도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육활동 침해의 주체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 II-3>과 같다.

〈표 II-3〉 교육활동 침해의 주체(교육활동 침해가 심각하다고 응답한 교원) 단위 : 명(%)

구분	항목	학생	학부모	기타	전체
전체		389(41.6)	495(53.0)	50(5.4)	934(100.0)
학교급	유	0(0.0)	30(90.9)	3(9.1)	33(100.0)
	초	172(32.3)	335(63.0)	25(4.7)	532(100.0)
	중	126(61.5)	68(33.2)	11(5.4)	205(100.0)
	고	81(61.4)	44(33.3)	7(5.3)	132(100.0)
	특	10(31.3)	18(56.3)	4(12.5)	32(100.0)
설립유형	국·공립	361(40.8)	475(53.8)	48(5.4)	884(100.0)
	사립	28(56.0)	20(40.0)	2(4.0)	50(100.0)
성별	남	129(46.4)	135(48.6)	14(5.0)	278(100.0)
	여	260(39.6)	360(54.9)	36(5.5)	656(100.0)
직위	교장	11(21.6)	36(76.5)	1(1.9)	51(100.0)
	교감	30(44.8)	35(52.2)	2(3.0)	67(100.0)
	교사	348(42.6)	421(51.6)	47(5.8)	816(100.0)
교직경력	~5년	63(50.0)	48(38.1)	15(11.9)	126(100.0)
	6~10년	33(35.1)	50(53.2)	11(11.7)	94(100.0)
	11~15년	53(43.1)	64(52.0)	6(4.9)	123(100.0)
	16~20년	57(45.2)	64(50.8)	5(4.0)	126(100.0)
	21~25년	83(43.2)	105(54.7)	4(2.1)	192(100.0)
	26~30년	35(36.1)	58(59.8)	4(4.1)	97(100.0)
	31년~	65(36.9)	106(60.3)	5(2.8)	176(100.0)
담임여부	담임	230(40.1)	311(54.2)	33(5.7)	574(100.0)
	비담임	159(44.2)	184(51.1)	17(4.7)	360(100.0)

3) 교육활동 침해 경험(서술형)

교원이 경험한 교육활동 침해 사례를 수집하여 교육활동 침해 주체별로 범주화하였다. 약 600건이 넘는 응답을 주체별로 분석한 결과는 <표 II-4>와 같다.

교육활동 침해 경험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수업, 평가, 생활지도)에 대한 부당한 간섭(20.8%)’과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 및 수업 방해(20.5%)’였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로는 학부모의 정당한 생활지도(주의, 훈계, 지적 등)와 학급운영(학급 내 자리배치, 학급규칙 등)에 대한 불만 표출, 학교생활기록부 내용에 대한 항의, 수업권 및 평가권 침해 등 대부분 학부모에 의한 것이었다.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 및 수업방해'는 대부분 학생에 의한 것으로 교사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수업 중 소란·휴대폰 사용·교실이탈·부적절한 용어 사용·면학분위기 훼손 등으로 수업 진행을 방해하는 사례가 있었다.

그다음은 '언행 문제(폭언, 욕설, 막말, 반말, 모욕, 소리지름, 외모평가 등)(18.6%)'가 차지하였다. 구체적으로 교사를 향한 학생 또는 학부모의 무례한 언사(욕설, 비난, 하대, 인격모독 등)와 모욕적인 행위(침 뱉기, 소리지름, 예의 없는 태도, 본인의 잘못에 대해 사과하지 않음 등)가 있었다. '무고 및 헐박(8.1%)'은 특히 아동학대 신고를 하겠다며 헐박하거나 무고한 사례가 많았다.

다음으로 '무리한 요구 및 과도한 민원(5.7%)'은 학부모가 자신의 자녀만 편에 해달라고 요구하거나 자녀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방과후 교과보충 수업이나 현장체험학습 등 이미 정해진 일정을 바꿀 것을 요구하는 경우, 수업 중이나 근무 외 시간에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학교의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 외에도 밀치기, 물기, 때리기, 물건 던지기 등의 '신체 폭력(폭행, 상해 등)(4.8%)'과 악의적인 민원을 반복 제기하는 등의 '공무 및 업무 방해(4.3%)'가 있었다. 수업 중 성희롱, 유사 성행위 등의 '성적 언동으로 인한 성적 굴욕감, 혐오감 및 성추행(3.7%)'과 주말이나 늦은 밤, 근무 외 시간 등에 하는 '비상식적인 연락 시간 및 횡수(3.3%)'가 뒤를 이었다.

'교원의 영상, 화상, 음성 등을 촬영, 녹화, 녹음, 합성 및 무단 배포(3.2%)'는 보통 수업이나 생활지도 중인 교사를 촬영하거나 녹음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명예 훼손(1.9%)', '손괴(1.6%)', '교실 무단 침입, 사전연락 없이 학교방문(1.4%)', '관리자의 부당한 간섭, 지시, 및 회유(0.6%)', '온라인 상에서 교사의 개인정보공개 및 교사에 대한 헐담, 비방 등(0.5%)', '담임교사 교체 요구(0.5%)', '기타(절도, 종교에 따른 교육활동 거부, 교권보호위원회 불참 후 행정심판 신고)(0.5%)' 등이 나타났다.

<표 II-4> 교육활동 침해 경험(유경험자, 서술형)

순서	주제	빈도(건)	비율(%)
	전체	628	100.0
1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수업, 평가, 생활지도)에 대한 부당한 간섭	130	20.8
2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 및 수업 방해	129	20.5
3	언행 문제(폭언, 욕설, 막말, 반말, 모욕, 소리지름, 외모평가 등)	117	18.6
4	무고 및 헐박	51	8.1
5	무리한 요구 및 과도한 민원	36	5.7
6	신체 폭력(폭행, 상해 등)	30	4.8
7	공무 및 업무 방해	27	4.3
8	성적 언동으로 인한 성적 굴욕감, 혐오감 및 성추행	23	3.7
9	비상식적인 연락 시간 및 횡수	21	3.3
10	교원의 영상, 화상, 음성 등을 촬영, 녹화, 녹음, 합성 및 무단 배포	20	3.2
11	명예훼손	12	1.9
12	손괴	10	1.6
13	교실 무단 침입, 사전연락 없이 학교방문	9	1.4
14	관리자의 부당한 간섭, 지시 및 회유	4	0.6
15	온라인 상에서 교사의 개인정보공개 및 교사에 대한 헐담, 비방 등	3	0.5
16	담임교사 교체 요구	3	0.5
17	기타 (절도, 종교에 따른 교육활동 거부, 교권보호위원회 불참 후 행정심판 신고)	3	0.5

4) 교육활동 보호 교육 및 침해 경험

교원들이 최근에 경험한 교육활동 보호 교육 및 침해 경험에 관하여 설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최근 1년 이내 “교육활동 보호” 관련 교육 또는 연수를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은 73.3%, 최근 1년 이내 “교육활동 침해” 사례를 듣거나 본 적이 있다는 응답은 86.3%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1년 이내 “교육활동 침해”를 한 번 이상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이 46.3%,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53.7%로 나타났다. 따라서 최근 1년 이내 “교육활동 침해”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어도 주변에서 듣거나 본 경험은 많으며, “교육활동 보호” 관련 교육이나 연수가 교원 대상으로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육활동 보호 교육 및 침해 경험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 II-5>와 같다.

<표 II-5> 교육활동 보호 교육 및 침해 경험

단위 : 명(%)

문항	예	아니오	전체
1. 최근 1년 이내 “교육활동 보호” 관련 교육 또는 연수를 받은 적이 있다.	1,234 (73.3)	449 (26.7)	1,683 (100.0)
2. 최근 1년 이내 “교육활동 침해” 사례를 듣거나 본 적이 있다.	1,453 (86.3)	230 (13.7)	1,683 (100.0)
3. 최근 1년 이내 “교육활동 침해”를 한 번 이상 받은 적이 있다.	779 (46.3)	904 (53.7)	1,683 (100.0)

5)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유형별 발생 가능성

여러 유형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교원 자신에게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 어느 정도로 걱정하는지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침해 행위 중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평균값 4.2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다음으로는 ‘무고(M=3.97)’,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 배포(M=3.93)’, ‘명예 훼손(M=3.88)’, ‘공무 및 업무 방해(M=3.8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성폭력 범죄’는 2.9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유형별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 II-6>과 같다.

<표 II-6>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유형별 발생 가능성

단위 : 명(%)

구분	전혀 걱정되지 않는다	걱정되지 않는다	보통이다	걱정된다	매우 걱정된다	전체	평균 (표준편차)
공무 및 업무 방해	65 (3.8)	138 (8.2)	325 (19.3)	649 (38.6)	506 (30.1)	1,683 (100.0)	3.83 (1.068)
무고	67 (4.0)	116 (6.9)	264 (15.7)	586 (34.8)	650 (38.6)	1,683 (100.0)	3.97 (1.085)
상해 및 폭행	111 (6.6)	243 (14.4)	521 (31.0)	477 (28.3)	331 (19.7)	1,683 (100.0)	3.47 (1.129)
협박	101 (6.0)	180 (10.7)	399 (23.7)	566 (33.6)	437 (26.0)	1,683 (100.0)	3.63 (1.152)
명예 훼손	71 (4.2)	116 (6.9)	320 (19.0)	608 (36.2)	568 (33.7)	1,683 (100.0)	3.88 (1.082)
손괴	149 (8.8)	301 (17.9)	557 (33.1)	388 (23.1)	288 (17.1)	1,683 (100.0)	3.22 (1.184)

구분	전혀 걱정되지 않는다	걱정되지 않는다	보통이다	걱정된다	매우 걱정된다	전체	평균 (표준편차)
성적 굴욕감 및 혐오감	142 (8.4)	272 (16.2)	514 (30.6)	428 (25.4)	327 (19.4)	1,683 (100.0)	3.31 (1.197)
성폭력 범죄	224 (13.3)	344 (20.4)	564 (33.5)	321 (19.1)	230 (13.7)	1,683 (100.0)	2.99 (1.214)
정보통신망 이용 불법 정보 유통	95 (5.6)	140 (8.3)	338 (20.1)	567 (33.7)	543 (32.3)	1,683 (100.0)	3.79 (1.149)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 합성하여 무단 배포	77 (4.6)	121 (7.2)	285 (16.9)	552 (32.8)	648 (38.5)	1,683 (100.0)	3.93 (1.118)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	50 (3.0)	88 (5.2)	184 (10.9)	507 (30.1)	854 (50.8)	1,683 (100.0)	4.20 (1.026)

나. 교육활동보호담당관 및 현행 교육활동 보호 정책에 대한 인식과 요구

1)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설치 및 운영 인지도

인천시교육청에서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2024년 1월 전국 최초로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을 설치하였다. 여기에서는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에 대한 인지도가 정책의 목적 달성 및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하여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인지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조사 결과, 교육활동보호담당관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9.1%, ‘몰랐다’고 응답한 비율은 40.9%로 나타났다.

배경변인별로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알고 있다’의 비율이 과반수를 넘었으나, 직위와 교직경력, 담임여부별 응답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직위별로 교장, 교감의 경우 각각 98.8%, 96.1%의 응답자가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교사의 경우 약 53.6%의 응답자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교직경력에서는 15년 이하 교원의 경우 ‘몰랐다’의 비율이 더 높은 데 반해, 16년 이상 교원의 경우에는 ‘알고 있다’의 비율이 높았다. 담임교사의 경우에도 ‘알고 있다’(50.5%)와 ‘몰랐다’(49.5%)의 비율이 비슷한 반면, 비담임교사는 ‘알고 있다’(71.3%)의 비율이 훨씬 높았다. 학생과 학부모를 직접 마주하는 교사, 특히 담임교사들이 교육활동보호담당관에 대한 인지도가 크게 높지 않은 점,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아직 하지 못한 저연차 교사들부터 15년

이하 교원들이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을 잘 모른다는 점은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을 비롯하여 관련 정책들에 대한 인지도도 낮을 수 있음을 시사하므로 관련 홍보가 적극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설치 및 운영 인지도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 II-7>과 같다.

<표 II-7>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설치 및 운영 인지도

단위 : 명(%)

구분		알고 있다	몰랐다	전체
전체		995(59.1)	688(40.9)	1,683(100.0)
학교급	유	44(65.7)	23(34.3)	67(100.0)
	초	493(59.1)	341(40.9)	834(100.0)
	중	228(57.4)	169(42.6)	397(100.0)
	고	197(59.5)	134(40.5)	331(100.0)
	특	33(61.1)	21(38.9)	54(100.0)
설립유형	국·공립	881(58.9)	615(41.1)	1,496(100.0)
	사립	114(61.0)	73(39.0)	187(100.0)
성별	남성	351(62.7)	209(37.3)	560(100.0)
	여성	644(57.3)	479(42.7)	1,123(100.0)
직위	교장	83(98.8)	1(1.2)	84(100.0)
	교감	123(96.1)	5(3.9)	128(100.0)
	교사	789(53.6)	682(46.4)	1,471(100.0)
교직경력	~5년	111(42.9)	148(57.1)	259(100.0)
	6~10년	69(40.6)	101(59.4)	170(100.0)
	11~15년	91(48.4)	97(51.6)	188(100.0)
	16~20년	117(53.7)	101(46.3)	218(100.0)
	21~25년	219(63.1)	128(36.9)	347(100.0)
	26~30년	141(73.1)	52(26.9)	193(100.0)
	31년~	247(80.2)	61(19.8)	308(100.0)
담임여부	담임	496(50.5)	487(49.5)	983(100.0)
	비담임	499(71.3)	201(28.7)	700(100.0)

2)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의 효용성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을 알고 있는 교원들에게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이 교육활동 보호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의 효용성에 대한 교원의 인식은 평균 3.55로 나타나 보통 수준이었다. 배경변인별 분석에서도 전체적으로 인식 수준이 평균 3점대로 나타났고, 직위에서 교감만이 4.02로 가장 높은 인식 수준을 보였다. 반면, 교직경력에서 5년 이하 교원들의 경우 인식 수준이 3.29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의 효용성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 II-8>과 같다.

<표 II-8>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의 효용성

단위 : 명(%)

구분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평균 (표준편차)
전체		32 (3.2)	84 (8.4)	336 (33.8)	395 (39.7)	148 (14.9)	995 (100.0)	3.55 (.953)
학교급	유	2 (2.3)	2 (2.3)	14 (31.8)	17 (38.6)	11 (25.0)	44 (100.0)	3.82 (.922)
	초	16 (3.2)	43 (8.7)	152 (30.8)	200 (40.7)	82 (16.6)	493 (100.0)	3.59 (.973)
	중	11 (4.8)	21 (9.2)	96 (42.2)	78 (34.2)	22 (9.6)	228 (100.0)	3.35 (.947)
	고	4 (2.0)	13 (6.6)	65 (33.0)	89 (45.2)	26 (13.2)	197 (100.0)	3.61 (.872)
	특	0 (0.0)	6 (18.2)	9 (27.3)	11 (33.3)	7 (21.2)	33 (100.0)	3.58 (1.032)
설립 유형	국·공립	30 (3.4)	82 (9.3)	294 (33.4)	343 (38.9)	132 (15.0)	881 (100.0)	3.53 (.970)
	사립	2 (1.8)	2 (1.8)	42 (36.8)	52 (45.6)	16 (14.0)	114 (100.0)	3.68 (.802)
성별	남	13 (3.7)	28 (8.0)	120 (34.2)	138 (39.3)	52 (14.8)	351 (100.0)	3.54 (.964)
	여	19 (3.0)	56 (8.7)	216 (33.5)	257 (39.9)	96 (14.9)	644 (100.0)	3.55 (.948)
직위	교장	1 (1.2)	3 (3.6)	19 (22.9)	43 (51.8)	17 (20.5)	83 (100.0)	3.87 (.823)
	교감	1 (0.8)	3 (2.4)	28 (22.8)	52 (42.3)	39 (31.7)	123 (100.0)	4.02 (.849)

구분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평균 (표준편차)
	교사	30 (3.8)	78 (9.9)	289 (36.6)	300 (38.0)	92 (11.7)	789 (100.0)	3.44 (.952)
교직 경력	~5년	5 (4.5)	11 (9.9)	52 (46.9)	33 (29.7)	10 (9.0)	111 (100.0)	3.29 (.928)
	6~10년	3 (4.3)	10 (14.5)	27 (39.2)	19 (27.5)	10 (14.5)	69 (100.0)	3.33 (1.038)
	11~15년	8 (8.7)	12 (13.2)	31 (34.1)	24 (26.4)	16 (17.6)	91 (100.0)	3.31 (1.171)
	16~20년	5 (4.3)	6 (5.1)	41 (35.1)	48 (41.0)	17 (14.5)	117 (100.0)	3.56 (.950)
	21~25년	7 (3.1)	24 (11.0)	73 (33.3)	91 (41.6)	24 (11.0)	219 (100.0)	3.46 (.940)
	26~30년	2 (1.4)	10 (7.1)	45 (31.9)	64 (45.4)	20 (14.2)	141 (100.0)	3.64 (.864)
	31년~	2 (0.8)	11 (4.5)	67 (27.1)	116 (47.0)	51 (20.6)	247 (100.0)	3.82 (.837)
담임 여부	담임	23 (4.6)	56 (11.3)	187 (37.7)	177 (35.7)	53 (10.7)	496 (100.0)	3.36 (.975)
	비담임	9 (1.8)	28 (5.6)	149 (29.9)	218 (43.7)	95 (19.0)	499 (100.0)	3.73 (.896)

3)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지속적 운영의 필요성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은 2024년 1월에 설치되어 3년간 운영되는 한시조직이지만, 교육활동 보호의 중요성에 비추어 보면 3년간의 내실있는 운영 이후에도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은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의 필요성에 대한 교원들의 인식 수준은 평균 4.21로 보통 수준을 상회하였고, 배경변인별로도 전체적으로 평균값이 4점 이상으로 나타나 교원들은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의 지속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지속적 운영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 II-9>와 같다.

〈표 II-9〉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지속적 운영의 필요성

단위 : 명(%)

구분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평균 (표준편차)
전체		20 (1.2)	25 (1.5)	284 (16.9)	604 (35.9)	750 (44.5)	1,683 (100.0)	4.21 (.858)
학교급	유	0 (0.0)	1 (1.5)	10 (14.9)	19 (28.4)	37 (55.2)	67 (100.0)	4.37 (.795)
	초	10 (1.2)	10 (1.2)	118 (14.1)	271 (32.5)	425 (51.0)	834 (100.0)	4.31 (.844)
	중	5 (1.3)	7 (1.8)	78 (19.6)	166 (41.8)	141 (35.5)	397 (100.0)	4.09 (.854)
	고	5 (1.5)	6 (1.8)	68 (20.5)	126 (38.1)	126 (38.1)	331 (100.0)	4.09 (.888)
	특	0 (0.0)	1 (1.9)	10 (18.5)	22 (40.7)	21 (38.9)	54 (100.0)	4.17 (.795)
설립 유형	국·공립	18 (1.2)	24 (1.6)	237 (15.8)	532 (35.6)	685 (45.8)	1,496 (100.0)	4.23 (.858)
	사립	2 (1.1)	1 (0.5)	47 (25.1)	72 (38.5)	65 (34.8)	187 (100.0)	4.05 (.847)
성별	남	12 (2.1)	10 (1.8)	106 (18.9)	198 (35.4)	234 (41.8)	560 (100.0)	4.13 (.925)
	여	8 (0.7)	15 (1.3)	178 (15.9)	406 (36.2)	516 (45.9)	1,123 (100.0)	4.25 (.820)
직위	교장	0 (0.0)	0 (0.0)	12 (14.3)	31 (36.9)	41 (48.8)	84 (100.0)	4.35 (.720)
	교감	0 (0.0)	1 (0.7)	12 (9.4)	43 (33.6)	72 (56.3)	128 (100.0)	4.45 (.697)
	교사	20 (1.4)	24 (1.6)	260 (17.7)	530 (36.0)	637 (43.3)	1,471 (100.0)	4.18 (.874)
교직 경력	~5년	2 (0.8)	6 (2.3)	56 (21.6)	102 (39.4)	93 (35.9)	259 (100.0)	4.07 (.857)
	6~10년	7 (4.1)	4 (2.4)	40 (23.5)	48 (28.2)	71 (41.8)	170 (100.0)	4.01 (1.060)
	11~15년	5 (2.7)	2 (1.0)	40 (21.3)	64 (34.0)	77 (41.0)	188 (100.0)	4.10 (.949)
	16~20년	1 (0.5)	4 (1.8)	33 (15.1)	83 (38.1)	97 (44.5)	218 (100.0)	4.24 (.809)
	21~25년	3 (0.9)	5 (1.4)	47 (13.5)	113 (32.6)	179 (51.6)	347 (100.0)	4.33 (.826)
	26~30년	0 (0.0)	2 (1.0)	32 (16.6)	69 (35.8)	90 (46.6)	193 (100.0)	4.28 (.774)

구분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평균 (표준편차)
	31년~	2 (0.6)	2 (0.6)	36 (11.7)	125 (40.6)	143 (46.5)	308 (100.0)	4.31 (.754)
담임 여부	담임	16 (1.6)	16 (1.6)	182 (18.5)	336 (34.2)	433 (44.1)	983 (100.0)	4.17 (.899)
	비담임	4 (0.5)	9 (1.3)	102 (14.6)	268 (38.3)	317 (45.3)	700 (100.0)	4.26 (.795)

4) 「2024 인천 교육활동보호 시행계획」 중점 과제 요구도 우선순위 분석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2024 인천 교육활동 보호 시행계획」 중점 과제의 중요도와 수행도에 대하여 대응표본 t-검정 및 Borich 공식으로 요구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총 20개 중점 과제의 t-검정에서 2개 항목(14-15번, 14-16번)을 제외한 18개 항목에서 중요도와 수행도 평균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우선순위가 높은 순서대로 일부 나열하면 ‘14-10. 교권침해 관련 특이(악성)민원 사안 대응(1순위)’, ‘14-6. 교육활동보호 법률지원 강화(2순위)’, ‘14-3. 교원보호공제 보장내역 확대(3순위)’, ‘14-9.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사안 운영(4순위)’, ‘14-7. 교원 치유·회복 심리상담 및 치료 지원(5순위)’ 등의 순이다. 「2024 인천 교육활동 보호 시행계획」 중점 과제에 대한 Borich 요구도 분석 결과는 <표 II-10>과 같다.

<표 II-10> 「2024 인천 교육활동 보호 시행계획」 중점 과제 Borich 요구도 분석

문항	중요도(a)	수행도(b)	차이(a-b)	요구도	우선 순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14-1. 시교육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4.22 (0.82)	3.80 (1.23)	0.42*** (1.31)	1.79	8
14-2.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지원	4.19 (0.84)	3.80 (1.26)	0.39*** (1.31)	1.64	9
14-3. 교원보호공제 보장내역 확대	4.44 (0.77)	3.81 (1.25)	0.63*** (1.35)	2.80	3
14-4. 교육활동보호 현장자문단 운영	4.13 (0.90)	3.74 (1.26)	0.39*** (1.36)	1.60	10
14-5. 교육활동 침해 특별교육 이수 지원	4.15 (0.92)	3.71 (1.28)	0.44*** (1.44)	1.83	7
14-6. 교육활동보호 법률지원 강화	4.48 (0.78)	3.77 (1.29)	0.72*** (1.40)	3.22	2

문항	중요도(a)	수행도(b)	차이(a-b)	요구도	우선 순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14-7. 교원 치유·회복 심리상담 및 치료 지원	4.43 (0.79)	3.83 (1.22)	0.61*** (1.34)	2.69	5
14-8. 원스톱 지원 신청 홈페이지 운영	4.30 (0.82)	3.84 (1.21)	0.46*** (1.29)	1.99	6
14-9.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사안 운영	4.40 (0.80)	3.77 (1.28)	0.63*** (1.41)	2.77	4
14-10. 교권침해 관련 특이(악성)민원 사안 대응	4.49 (0.78)	3.65 (1.35)	0.84*** (1.50)	3.76	1
14-11. 찾아가는 교육활동보호 교실 운영	3.96 (0.97)	3.73 (1.25)	0.23*** (1.39)	0.90	13
14-12. 교육활동보호 역량강화 연수 운영	3.90 (0.99)	3.81 (1.17)	0.09** (1.30)	0.35	18
14-13. 교육활동보호 교육자료 개발·보급	3.89 (0.98)	3.76 (1.20)	0.13*** (1.33)	0.50	15
14-14. 다채움 치유 회복 프로그램 운영	4.13 (0.92)	3.82 (1.25)	0.31*** (1.36)	1.26	11
14-15. 교육공동체 교원온침표 공모사업 운영	3.85 (1.04)	3.81 (1.22)	0.05 (1.35)	0.18	19
14-16. 교육활동보호 상호존중 주간 운영	3.77 (1.05)	3.74 (1.20)	0.04 (1.35)	0.14	20
14-17. 교원 존중 문화 조성 사업 추진	3.83 (1.08)	3.72 (1.22)	0.11** (1.37)	0.41	16
14-18. 교육활동보호 정책 협의체 운영	3.97 (0.97)	3.74 (1.24)	0.24*** (1.36)	0.94	12
14-19. 교육활동보호 소통 간담회 운영	3.873 (0.99)	3.70 (1.26)	0.17*** (1.38)	0.68	14
14-20. 교육활동보호 홍보 자료 제작 배부	3.82 (1.01)	3.72 (1.21)	0.10** (1.32)	0.37	17

다음으로, The Locus For Focus 모델을 활용하여 「2024 인천 교육활동 보호 시행계획」 중점 과제에 대한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중요도의 평균(M=4.11)과 중요도와 수행도 불일치 수준(M=0.35)의 평균을 축으로 하여 좌표 평면을 구분한 결과, 두 영역의 값이 모두 높은 1사분면에 포함되는 항목은 총 10개로 나타났다. 「2024 인천 교육활동 보호 시행계획」 중점 과제에 대한 The Locus for Focus 모델 결과는 [그림 II-1]과 같다.



[그림 II-1] 「2024 인천 교육활동 보호 시행계획」 중점 과제 The Locus for Focus 모델 결과

이를 종합하여 Borich 요구도와 The Locus for Focus 모델의 우선순위 도출 방법에 따라 공통적으로 요구가 높은 중점 과제는 14-1~10번으로 총 10개 항목이다. 이는 20개 항목 중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다만, Borich 요구도에서 도출된 우선순위와 The Locus for Focus 모델 1사분면에 포함되는 항목이 모두 일치하기에 차우선순위는 별도로 도출되지 않았다. 「2024 인천 교육활동 보호 시행계획」 중점 과제에 대한 요구도 우선순위 분석 결과는 <표 II-11>과 같다.

<표 II-11> 「2024 인천 교육활동보호 시행계획」 중점 과제 요구도 우선순위 분석

(① : Borich 요구도, ② : The Locus for Focus 모델)

문항	①	②
14-1. 시교육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	○
14-2.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지원	○	○
14-3. 교원보호공제 보장내역 확대	○	○
14-4. 교육활동보호 현장자문단 운영	○	○

문항	①	②
14-5. 교육활동 침해 특별교육 이수 지원	○	○
14-6. 교육활동보호 법률지원 강화	○	○
14-7. 교원 치유·회복 심리상담 및 치료 지원	○	○
14-8. 원스톱 지원 신청 홈페이지 운영	○	○
14-9.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사안 운영	○	○
14-10. 교권침해 관련 특이(악성)민원 사안 대응	○	○
14-11. 찾아가는 교육활동보호 교실 운영		
14-12. 교육활동보호 역량강화 연수 운영		
14-13. 교육활동보호 교육자료 개발·보급		
14-14. 다채움 치유 회복 프로그램 운영		
14-15. 교육공동체 교원온침표 공모사업 운영		
14-16. 교육활동보호 상호존중 주간 운영		
14-17. 교원 존중 문화 조성 사업 추진		
14-18. 교육활동보호 정책 협의체 운영		
14-19. 교육활동보호 소통 간담회 운영		
14-20. 교육활동보호 홍보 자료 제작 배부		

학교급에 따른 「2024 인천 교육활동보호 시행계획」 중점 과제 요구도 우선 순위 분석 결과, 유치원의 경우 최우선순위로 14-1번, 14-3~4번, 14-7번, 14-9~10번이 도출되었으며, 차우선순위는 14-2번, 14-6번, 14-11번, 14-18번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요구도 우선순위 분석 결과와 동일하다. 고등학교의 경우, 14-1번, 14-3번, 14-5~10번, 14-14번이 최우선순위로 나타났으며, 차우선순위는 별도로 도출되지 않았다. 특수학교의 경우, 최우선순위로 14-1번, 14-3번, 14-5번, 14-6~10번이 도출되었으며, 차우선순위는 14-4번, 14-11번으로 나타났다.

학교급에 따라 일부 차별적인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4-14. 다채움 치유 회복 프로그램 운영’은 고등학교에서만 최우선순위로 나타났다. ‘14-11. 찾아가는 교육활동보호 교실 운영’은 유치원과 특수학교에서만 차우선순위로 도출되었다. ‘14-2.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지원’, ‘14-6. 교육활동보호 법률지원 강화’, ‘14-8. 원스톱 지원 신청 홈페이지 운영’은 유치원에서만, ‘14-4. 교육활동보호 현장자문단 운영’은 특수학교에서만 차우선순위로 도출되었다.

또한, 교직경력에 따른 「2024 인천 교육활동보호 시행계획」 중점 과제 요구도 우선순위 분석 결과, 5년 이하의 경우, 14-1번, 14-3번, 14-6~10번이 최우선순위로 도출되었으며, 차우선순위는 14-4~5번으로 나타났다. 6~10년의 경우, 14-1번, 14-3번, 14-5~10번이 최우선순위로 나타났으며, 차우선순위는 별도로 도출되지 않았다. 11~15년, 21~25년, 31년 이상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요구도 우선순위 분석 결과와 동일하다. 26~30년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요구도 우선순위 분석 결과와 동일하지만, 최우선순위로 14-14번이 추가되었다.

교직경력에 따라 일부 차별적인 요구사항을 살펴보면, ‘14-14. 다채움 치유 회복 프로그램 운영’은 16~20년과 26~30년에서 최우선순위로 나타났다. ‘14-4. 교육활동보호 현장자문단 운영’, ‘14-5. 교육활동 침해 특별교육 이수 지원’은 5년 이하에서만 차우선순위로 도출되었다.

다.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보호 관련 정책에 대한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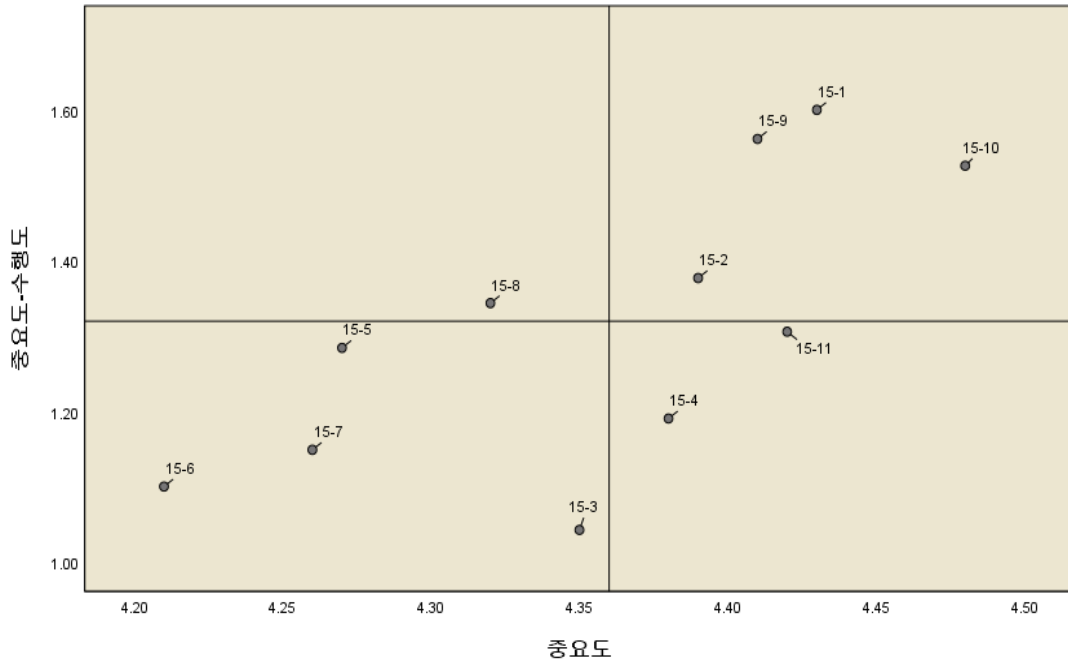
1)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보호조치 요구도 우선순위 분석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보호조치의 중요도와 수행도에 대하여 대응표본 t-검정 및 Borich 공식으로 요구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총 11개 항목 모두 중요도와 수행도 평균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우선순위가 높은 순서대로 일부 나열하면 ‘15-1. 교사들의 교육활동 전념을 위한 행정업무 경감 및 업무 정상화(1순위)’, ‘15-9. 교육활동 침해 학생과 보호자의 특별교육 내실화(2순위)’, ‘15-10.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확대(3순위)’, ‘15-2. 교사의 안정과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활동 대체 인력풀 활성화(4순위)’, ‘15-8. 교육활동 보호 관련 교육청과 국가의 홍보 및 노력(5순위)’ 등의 순이다.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보호조치에 대한 Borich 요구도 분석 결과는 <표 II-12>와 같다.

〈표 II-12〉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보호조치 Borich 요구도 분석

문항	중요도(a)	수행도(b)	차이(a-b)	요구도	우선 순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15-1. 교사들의 교육활동 전념을 위한 행정 업무 경감 및 업무 정상화	4.43 (0.82)	2.83 (1.14)	1.60*** (1.45)	7.10	1
15-2. 교사의 안정과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활동 대체 인력풀 활성화	4.39 (0.84)	3.01 (1.13)	1.38*** (1.40)	6.04	4
15-3. 교권과 학생인권이 상호 보장되는 인권 친화적이고 민주적인 학교 문화 조성 노력	4.35 (0.84)	3.30 (1.07)	1.04*** (1.25)	4.53	11
15-4.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 강화	4.38 (0.83)	3.19 (1.10)	1.19*** (1.34)	5.21	8
15-5. 학교 및 지역사회 이해가 높은 갈등 조정 전문 인력풀 구축 및 정기적인 질 관리	4.27 (0.86)	2.98 (1.05)	1.28*** (1.30)	5.48	7
15-6. 아동학대, 학생인권 관련 적절한 대처를 위한 판례와 매뉴얼 보급	4.21 (0.89)	3.11 (1.04)	1.10*** (1.30)	4.63	10
15-7.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전문성 강화	4.26 (0.88)	3.11 (1.03)	1.15*** (1.26)	4.89	9
15-8. 교육활동 보호 관련 교육청과 국가의 홍보 및 노력	4.32 (0.87)	2.98 (1.11)	1.34*** (1.39)	5.81	5
15-9. 교육활동 침해 학생과 보호자의 특별 교육 내실화	4.41 (0.84)	2.84 (1.15)	1.56*** (1.43)	6.88	2
15-10.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확대	4.48 (0.78)	2.95 (1.12)	1.53*** (1.37)	6.83	3
15-11. 교육활동 침해 시 대응을 위한 One-stop 시스템 및 긴급 지원팀 확대 운영	4.42 (0.80)	3.11 (1.07)	1.31*** (1.27)	5.77	6

다음으로, The Locus For Focus 모델을 활용하여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보호조치에 대한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중요도의 평균(M=4.36)과 중요도와 수행도 불일치 수준(M=1.32)의 평균을 축으로 하여 좌표평면을 구분한 결과, 1사분면에 포함되는 항목은 총 4개로 나타났다.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보호조치에 대한 The Locus for Focus 모델 결과는 [그림 II-2]와 같다.



[그림 II-2]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보호조치 The Locus for Focus 모델 결과

이를 종합하여 Borich 요구도와 The Locus for Focus 모델의 우선순위 도출 방법에 따라 공통적으로 요구가 높은 중점 과제는 15-1~2번, 15-9~10번으로 총 4개 항목이다. 이는 11개 항목 중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Borich 요구도에서 도출된 우선순위와 The Locus for Focus 모델 1사분면에 포함되는 항목이 모두 일치하기에 차우선순위는 별도로 도출되지 않았다.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보호조치에 대한 요구도 우선순위 분석 결과는 <표 II-13>과 같다.

<표 II-13>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보호조치 요구도 우선순위 분석

(① : Borich 요구도, ② : The Locus for Focus 모델)

문항	①	②
15-1. 교사들의 교육활동 전념을 위한 행정업무 경감 및 업무 정상화	○	○
15-2. 교사의 안정과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활동 대체 인력풀 활성화	○	○
15-3. 교권과 학생인권이 상호 보장되는 인권 친화적이고 민주적인 학교 문화 조성 노력		

문항	①	②
15-4.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 강화		
15-5. 학교 및 지역사회 이해가 높은 갈등 조정 전문 인력풀 구축 및 정기적인 질 관리		
15-6. 아동학대, 학생인권 관련 적절한 대처를 위한 판례와 매뉴얼 보급		
15-7.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전문성 강화		
15-8. 교육활동 보호 관련 교육청과 국가의 홍보 및 노력		
15-9. 교육활동 침해 학생과 보호자의 특별교육 내실화	○	○
15-10.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확대	○	○
15-11. 교육활동 침해 시 대응을 위한 One-stop 시스템 및 긴급 지원팀 확대 운영		

관련하여 학교급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보호조치 요구도 우선순위 분석 결과, 유치원의 경우 최우선순위로 15-1번, 15-8번, 15-10번이 도출되었으며, 차우선순위는 15-4, 15-9번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의 경우, 15-1번, 15-9~11번이 최우선순위로 나타났으며, 차우선순위는 도출되지 않았다. 중학교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요구도 우선순위 분석 결과와 동일하다. 고등학교와 특수학교의 경우, 15-1~2번, 15-8~10번이 최우선순위로 나타났으며, 차우선순위는 도출되지 않았다.

학교급에 따라 일부 차별적인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5-8. 교육활동 보호 관련 교육청과 국가의 홍보 및 노력’은 유치원, 고등학교, 특수학교에서 최우선순위로 나타났다. ‘15-11. 교육활동 침해 시 대응을 위한 One-stop 시스템 및 긴급 지원팀 확대 운영’은 초등학교에서만 최우선순위로 나타났다. ‘15-4.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 강화’는 유치원에서만 차우선순위로 도출되었다.

또한, 교직경력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보호조치 요구도 우선순위 분석 결과, 5년 이하의 경우, 15-1번, 15-9~10번이 최우선순위로 나타났으며, 차우선순위는 별도로 도출되지 않았다. 6~10년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요구도 우선순위 분석 결과와 동일하지만, 최우선순위로 15-8번이 추가되었다. 11~15년의 경우, 15-1번, 15-9~10번이 최우선순위로 나타났으며, 차우선순위는 별도로 도출되지 않았다. 16~20년, 21~25년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요구도 우선순위 분석 결과와 동일하지만, 최우선순위로 15-11번이 추가되었다. 26~30년의 경우, 15-2번, 15-9~10번이 최우선순위로 도출되었으며, 차우선순위는 15-1번, 15-11번이 나타났다. 31년의 경우, 15-8~10번이 최우선순위로 도출되었으며, 차우선순위는 15-1번, 15-11번으로 나타났다.

교직경력에 따라 일부 차별적인 요구사항을 살펴보면, ‘15-8. 교육활동 보호 관련 교육청과 국가의 홍보 및 노력’은 6~10년, 31년 이상에서 최우선순위로 나타났다. ‘15-11. 교육활동 침해 시 대응을 위한 One-stop 시스템 및 긴급 지원팀 확대 운영’은 16~20년과 21~25년에서는 최우선순위로, 26~30년과 31년 이상에서는 차우선순위로 도출되었다.

2) 교육활동보호담당관에서 추진하기를 희망하는 사업(1순위)

인천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담당관에서 추진하기를 희망하는 사업에 대해 ① 학교변호사 제도, ② 교원 보호시스템 강화, ③ 권역별 교육활동보호센터 운영, ④ 교육활동 보호 인식 제고를 위한 공익 광고 제작 및 방영, ⑤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학생자치규정 제정, ⑥ 학부모의 책무 등을 규정한 학부모 선언문 공표, ⑦ 수업방해 예방 선도학교 운영, ⑧ 정서행동위기학생 및 문제행동학생 지도를 위한 전문인력 지원, ⑨ 학부모 활동가, ⑩ 교사 일상 도우미 채용제도 및 학급 조교 배치 프로젝트를 제시하고, 3개를 우선순위대로 선택하도록 하였다.

전체 응답 분석 결과, <표 II-14>와 같이 모든 집단에서 1순위로 ‘① 학교변호사 제도’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2순위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것은 ‘② 교원 보호시스템 강화’이지만, 일부 집단에서는 상이한 의견이 도출되었다. 예를 들어, 사립학교의 경우 ‘② 교원 보호시스템 강화’와 ‘⑧ 정서행동위기학생 및 문제행동학생 지도를 위한 전문인력 지원’의 응답률이 동일했으며, 교장/교감과 26~30년/31년 이상의 경우, ‘⑧ 정서행동위기학생 및 문제행동학생 지도를 위한 전문인력 지원’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았다. 마지막으로, 3순위에서는 대체로 ‘⑧ 정서행동위기학생 및 문제행동학생 지도를 위한 전문인력 지원’이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으나, 다양한 집단에서 상이한 의견이 도출되었다. 예를 들어, 특수학교의 경우, ‘③ 권역별 교육활동보호센터 운영’이, 중학교, 사립학교, 교장/교감, 5년 이하/26~30년의 경우, ‘⑩ 교사 일상 도우미 채용제도 및 학급 조교 배치 프로젝트’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았다.

〈표 II-14〉 교육활동보호담당관에서 추진하기를 희망하는 사업(1순위)

단위 :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전체
전체		785 (46.6)	285 (16.9)	77 (4.6)	33 (2.0)	57 (3.4)	56 (3.3)	33 (2.0)	241 (14.3)	13 (0.8)	103 (6.1)	1,683 (100.0)
학교 급	유	24 (35.8)	10 (14.9)	5 (7.5)	5 (7.5)	1 (1.4)	5 (7.5)	2 (3.0)	6 (9.0)	2 (3.0)	7 (10.4)	67 (100.0)
	초	404 (48.5)	143 (17.1)	37 (4.4)	13 (1.6)	26 (3.1)	29 (3.5)	8 (1.0)	131 (15.7)	6 (0.7)	37 (4.4)	834 (100.0)
	중	167 (42.1)	80 (20.2)	14 (3.5)	8 (2.0)	17 (4.3)	12 (3.0)	10 (2.5)	54 (13.6)	2 (0.5)	33 (8.3)	397 (100.0)
	고	162 (49.0)	47 (14.2)	19 (5.7)	7 (2.1)	12 (3.6)	6 (1.8)	12 (3.6)	38 (11.5)	2 (0.6)	26 (7.9)	331 (100.0)
	특	28 (51.9)	5 (9.3)	2 (3.5)	0 (0.0)	1 (1.9)	4 (7.4)	1 (1.9)	12 (22.2)	1 (1.9)	0 (0.0)	54 (100.0)
설립 유형	국·공 립	700 (46.9)	258 (17.2)	65 (4.3)	26 (1.7)	47 (3.1)	51 (3.4)	28 (1.9)	218 (14.6)	12 (0.8)	91 (6.1)	1,496 (100.0)
	사립	85 (45.6)	27 (14.4)	12 (6.4)	7 (3.7)	10 (5.3)	5 (2.7)	5 (2.7)	23 (12.3)	1 (0.5)	12 (6.4)	187 (100.0)
성별	남성	311 (55.6)	75 (13.4)	32 (5.7)	8 (1.4)	21 (3.8)	19 (3.4)	12 (2.1)	55 (9.8)	3 (0.5)	24 (4.3)	560 (100.0)
	여성	474 (42.2)	210 (18.7)	45 (4.0)	25 (2.2)	36 (3.2)	37 (3.3)	21 (1.9)	186 (16.6)	10 (0.9)	79 (7.0)	1,123 (100.0)
직위	교장	49 (58.3)	11 (13.1)	4 (4.8)	0 (0.0)	2 (2.4)	6 (7.1)	1 (1.2)	7 (8.3)	1 (1.2)	3 (3.6)	84 (100.0)
	교감	57 (44.6)	14 (10.9)	14 (10.9)	5 (3.9)	3 (2.3)	10 (7.8)	3 (2.3)	16 (12.6)	1 (0.8)	5 (3.9)	128 (100.0)
	교사	679 (46.2)	260 (17.7)	59 (4.0)	28 (1.9)	52 (3.5)	40 (2.7)	29 (2.0)	218 (14.8)	11 (0.7)	95 (6.5)	1,471 (100.0)
교직 경력	~5년	114 (44.0)	60 (23.2)	5 (1.9)	2 (0.8)	13 (5.0)	7 (2.7)	7 (2.7)	28 (10.8)	1 (0.4)	22 (8.5)	259 (100.0)
	6~10 년	68 (40.0)	35 (20.6)	3 (1.7)	4 (2.4)	9 (5.3)	8 (4.7)	2 (1.2)	22 (12.9)	2 (1.2)	17 (10.0)	170 (100.0)
	11~15 년	87 (46.3)	31 (16.5)	8 (4.3)	2 (1.0)	6 (3.2)	6 (3.2)	7 (3.7)	32 (17.0)	0 (0.0)	9 (4.8)	188 (100.0)
	16~20 년	97 (44.5)	42 (19.3)	11 (5.0)	3 (1.4)	3 (1.4)	3 (1.4)	4 (1.8)	38 (17.4)	2 (0.9)	15 (6.9)	218 (100.0)
	21~25 년	176 (50.7)	50 (14.4)	11 (3.2)	11 (3.2)	12 (3.5)	6 (1.7)	5 (1.4)	57 (16.4)	4 (1.2)	15 (4.3)	347 (100.0)
	26~30 년	85 (44.0)	28 (14.5)	11 (5.7)	5 (2.6)	2 (1.0)	11 (5.7)	3 (1.6)	31 (16.1)	1 (0.5)	16 (8.3)	193 (100.0)
	31년~	158 (51.3)	39 (12.7)	28 (9.1)	6 (1.9)	12 (3.9)	15 (4.9)	5 (1.6)	33 (10.7)	3 (1.0)	9 (2.9)	308 (100.0)
담임 여부	담임	455 (46.3)	170 (17.3)	29 (3.0)	19 (1.9)	34 (3.5)	29 (3.0)	19 (1.9)	156 (15.9)	8 (0.7)	64 (6.5)	983 (100.0)
	비 담임	330 (47.1)	115 (16.4)	48 (6.9)	14 (2.0)	23 (3.3)	27 (3.9)	14 (2.0)	85 (12.1)	5 (0.7)	39 (5.6)	700 (100.0)

3) 교육활동보호담당관에서 추진하기를 희망하는 사업(서술형)

교육활동보호담당관에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추진하기를 희망하는 사업과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추가 의견은 서술형으로 기술하도록 하였다. 수집된 의견은 총 215건으로 나타났다. 응답을 주제별로 분석한 결과는 <표 II-15>와 같다.

<표 II-15> 교육활동보호담당관에서 추진하기를 희망하는 사업(서술형)

순서	주제	빈도(건)	비율(%)
전체		215	100.0
1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법과 제도 마련	27	12.6
2	전체 학부모 또는 학생 대상 교육활동 보호 교육 실시	24	11.2
3	교권침해 학부모 또는 학생 처벌 및 재발방지 교육 실시	22	10.2
4	문제학생 지도를 위한 분리 및 지원 체계 구축	21	9.8
5	교권침해 피해교사의 회복·치유를 위한 적극적 대응 및 지원	19	8.9
6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학교변호사, 학교전담경찰관, 협력교사 등) 활용	16	7.4
7	정서행동위기학생 지도를 위한 분리 및 지원 체계 구축	14	6.5
8	교육활동 보호 문화 형성	14	6.5
9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 방지 및 악성민원 대응 법과 제도 마련	13	6.0
10	교사의 사생활 보호	10	4.7
11	교육청 또는 관리자의 태도 및 인식 개선	8	3.7
12	단위학교의 교육활동 보호 관련 업무부담 완화	5	2.3
13	교육청 차원의 교육활동 보호 인력 확보 및 파견	5	2.3
14	학교 보안 강화	5	2.3
15	유치원, 특수학교 등 특정 학교급 대상 교권보호 강화	4	1.9
16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홍보	4	1.9
17	학급 당 학생 수 감축	2	1.0
18	재정적 지원	1	0.4
19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단위학교의 권한 강화	1	0.4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법과 제도 마련(12.6%)’이었다. 구체적으로 교사가 수업 및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예산 투입 및 인력 확보 등을 요구하는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다음으로 ‘전체 학부모 또는 학생 대상 교육활동 보호 교육 실시(11.2%)’, ‘교권침해 학부모 또는 학생 처벌 및 재발 방지 교육 실시(10.2%)’는 전체 학부모 또는 학생 대상으로는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인식 개선이, 교권침해 학부모 또는 학생 대상으로는 처벌 강화, 숙려제도, 특별교육 이수시간 확대 등 처벌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문제학생 지도를 위한 분리 및 지원 체계 구축(9.8%)’, ‘교권침해 피해교사의 회복·치유를 위한 적극적 대응 및 지원(8.9%)’은 교권침해 사안 발생 시 긴급하게는 즉각적인 분리 지도를 실시하되, 장기적으로는 피해교사의 회복 및 치유를 위한 다방면의 보호 조치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활용(7.4%)’에 대한 의견으로는 학교 변호사 제도 확대, 상담 인력 증강, 교육활동보호담당관/학교전담경찰관 학교 상주, 협력교사/보조교사/학급조교 등이 제안되었다. ‘정서행동위기학생 지도를 위한 분리 및 지원 체계 구축(6.5%)’에서는 분리 지도는 물론 정서행동위기학생 조기 발견 및 선제적 지원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교육활동 보호 문화 형성(6.5%)’은 교원을 존중하는 사회 공감대뿐만 아니라 관리자나 동료교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교권침해 사안을 신고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 방지 및 악성민원 대응 법과 제도 마련’의 응답은 6.0%로 나타났다. ‘교사의 사생활 보호(4.7%)’에 대한 의견으로는 업무용 연락처 지원, 학부모와의 통화 자동 녹음, 학교 내 불법 녹취 관리 등이 제안되었다. ‘교육청 또는 관리자의 태도 및 인식 개선’의 응답은 3.7%로 나타났다. ‘단위학교의 교육활동 보호 관련 업무 부담 완화(2.3%)’에 대한 의견으로는 교육청에서 교육활동 보호 관련 업무 일괄 처리, 교육활동 보호 관련 학부모 연수 자료 제공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교육청 차원의 교육활동 보호 인력 확보 및 파견’의 응답은 2.3%로 나타났다. ‘학교 보안 강화(2.3%)’에 대한 의견으로는 경비 인력 확충, 학교방문 사전예약제, CCTV 설치 등이 제안되었다. 이외에도 ‘유치원, 특수학교 등 특정 학교급 대상 교권보호 강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홍보’, ‘학급 당 학생 수 감축’, ‘재정적 지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단위학교의 권한 강화’ 등의 소수 의견이 도출되었다.

3. 소결

이상으로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의 중기 사업 추진 방안을 탐색하기 위하여 교육활동보호담당관 및 교육활동 보호 정책에 대한 교원의 인식과 요구를 살펴보았다. 주요 내용은 크게 1) 교육활동 침해 실태 및 인식, 2) 교육활동보호담당관 및 현행 교육활동 보호 정책에 대한 인식과 요구, 3)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보호 관련 정책에 대한 요구로 구분하였다. 주요 내용별 설문조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내 교육활동 침해의 심각성에 대해 응답 교원의 약 55.4%(934명, ‘심각하다’와 ‘매우 심각하다’ 응답자 합계)가 심각하다고 응답하였다. 5점 척도에서는 평균 3.52로 나타나 교육활동 침해의 심각성에 대한 교원의 인식은 보통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교원의 인식(M=3.71)이 가장 높았고, 교직경력에서는 11~15년 사이 교원의 인식(M=3.74)이 가장 높았다. 이에 반해, 가장 낮은 인식은 5년 이하 저경력 교원(M=3.41)으로 나타났다.

교육활동 침해 주체로는 학부모(53.0%)가 학생(41.6%)보다 많았다. 주목할 만한 점은 유, 초, 특수학교 교원의 경우 학부모를 선택한 교원이 많은 데 반해, 중, 고등학교 교원은 학생을 선택한 교원이 많았다. 교직경력별로는 5년 이하 교원만 학생을 선택한 경우가 많았다. 한편, 교육활동 침해 경험(서술형)에서는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침해 행위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20.8%)’으로 나타났고, 이어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 및 수업 방해(20.5%)’, ‘언행 문제(18.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활동 보호 교육 및 침해 경험에 대한 인식 분석 결과, 법정 의무연수를 제외하고, ‘최근 1년 이내 “교육활동 보호” 관련 교육 또는 연수를 받은 적이 있다’에 응답한 교원은 약 73.3%(1,234명)로 확인되었다. 또한 최근 1년 이내 “교육활동 침해” 사례를 듣거나 본 적이 있는 교원은 약 86.3%(1,453명), 최근 1년 이내 “교육활동 침해”를 한 번 이상 받은 적이 있는 교원은 약 46.3%(779명)이었다. 덧붙여,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M=4.20)’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무고(M=3.97)’,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 배포(M=3.9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교육활동보호담당관 및 현행 교육활동 보호 정책과 관련하여, 응답 교원의 약 59.1%(995명)가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을 알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직위별 응답 결과에서 교장·교감의 경우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을 알고 있는 경우가 95%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교사는 약 53.6%만이 알고 있다고 응답한 점이다. 교직경력에서도 15년 이하 교원은 과반수 이상이 몰랐다고 응답하였고, 비담임교사보다 담임교사의 ‘알고 있다’ 응답률이 저조하였다.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을 알고 있는 교원을 대상으로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의 효용성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 5점 척도에서 평균 3.55로 나타나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의 효용성은 보통 수준이었다. 그러나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의 지속적 운영에 대한 필요성은 평균 4.21로 나타났다. 즉 평균 수준의 효용성에도 불구하고, 교원들은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의 필요성에 대해 높이 인식하였다.

현 정책에 대한 요구도 분석 결과, 20개 항목 중 10개 항목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항목은 주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때의 대응과 사후지원에 대한 것으로, 교원들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때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과 사후지원의 강화에 대해서 높은 요구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반해, 예방적 차원에 해당하는 중점 과제들은 상대적으로 요구도가 높게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보호 관련 정책에 대한 요구 분석 결과, ‘교사들의 교육활동 전념을 위한 행정업무 경감 및 업무 정상화’, ‘교사의 안정과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활동 대체 인력풀 활성화’, ‘교육활동 침해 학생과 보호자의 특별교육 내실화’,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확대’가 최우선 요구사항으로 도출되었다. 이에 특별교육 내실화 및 피해교원에 대한 사후지원 확대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이 가운데 교사의 행정업무 경감 및 업무 정상화와 교육활동 대체 인력풀 활성화는 사실상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의 직무 범위를 넘어서는 내용이지만, 궁극적으로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데 있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을 넘어 교육청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해외사례 및 타 시도교육청 정책에 대한 요구도 분석 결과, 교원들은 ‘학교변호사 제도(46.6%)’를 가장 많이 요구하였다. 이어 녹음기 보급, 휴대용보호장비, 비상벨 구축 등 ‘교원 보호시스템 강화(16.9%)’, ‘정서행동위기학생 및 문제행동 학생 지도를 위한 전문인력 지원(14.3%)’ 등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다. 이외에 추가적인 요구사항(서술형)으로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법과 제도 마련(12.6%)’이 1순위로 나타났고, ‘전체 학부모 또는 학생 대상 교육활동 보호 교육 실시(11.2%)’, ‘교권침해 학부모 또는 학생 처벌 및 재발 방지 교육 실시(10.2%)’ 등의 순으로 확인되었다.

III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중기 사업 추진 방안 탐색

1. 교육활동보호담당관 현행 중점
과제 강화
2.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교원 요구
기반 신설 사업 추진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중기 사업 추진 방안 탐색

교육활동보호담당관 및 교육활동 보호 정책에 대한 교원의 인식과 요구 분석을 토대로, 본 장에서는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의 중기 사업 추진 방안을 제안하였다. 방안은 크게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의 현행 중점 과제 강화 방안과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교원 요구 기반 신설 사업 추진 방안으로 구분하였다. 본 장에서 제시하는 방안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쳤고, 협의 결과를 토대로 보완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표 Ⅲ-1〉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중기 사업 추진 방안

방안	세부 내용
현행 중점 과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이(악성)민원 사안 대응 강화 •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 강화 • 교육활동 침해 학생과 보호자의 특별교육 내실화 •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확대
신설 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방)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색있는 교육프로그램 개발 • (대응) 교원 보호시스템 강화 • (사후지원) 사안 처리 이후 단위학교 모니터링 체계 구축

1. 교육활동보호담당관 현행 중점 과제 강화

가. 특이(악성)민원 사안 대응 강화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의 현행 중점 과제 20개 중에서 높은 요구도를 보인 10개 과제는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했을 때의 대응과 사후지원에 관한 것이다. 이는 교원들이 교육활동 침해 대응 및 사후지원에 대해서 높은 요구를 보이는 것으로, 이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다. 특히 Borich 요구도 분석 결과에서 상위 순위로 나타난 중점 과제들에 대한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Borich 요구도 분석 결과, 1순위로 나타난 것은 ‘교권침해 관련 특이(악성)민원 사안 대응’이다. 여기에서 ‘특이(악성)민원’은 지속적이고 비이성적인 불만 형

태(반복적인 고충 제기, 욕설, 폭언, 협박, 공갈 등)을 통해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담당관, 2024)를 말한다. 이에 대해서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은 현재 사안에 대한 상담과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고, 피해교원에 대한 치유지원(협약기관 연계, 비용 등), 학교와 특이(악성)민원인 차단 관리 직접 대응, 특이(악성)민원인 교육감 대리 고발 검토 등의 대응을 하고 있다. 다만, 올해 신설된 과제이기에 대응 체계가 적절하게 갖추어져 있지 않을 수 있으며, 교원들의 인지도도 낮았던 것으로 추측된다.

특이(악성)민원은 교사 개인이 대응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사안이다. 특히 이러한 성격의 민원은 일회성이 아닌 지속되기 때문에 대비책이 필요하다. 이에 최근 공공기관에서는 특이(악성)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인천시의 경우 8월에 모의훈련을 실시했고, 대전시교육청도 6월에 모의훈련을 진행하였다. 이를 참고하여 교육청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특이(악성)민원에 대응하는 모의훈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민원에 피해받는 사람은 결국 교사이기 때문이다. 직무연수나 교내 자율연수 형태로 연계하여 특이(악성)민원에 대응하는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물론 학교 밖에서의 신속한 지원도 요구되지만, 특이(악성)민원이 발생했을 때 신속히 대응해서 교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학교 내에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학교 내 민원 대응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것이다.

나.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 강화

다음으로, Borich 요구도 분석 결과에서 2순위로 도출된 것은 ‘교육활동보호 법률지원 강화’이다. 현재 교육활동보호담당관에서는 법률 상담 및 자문을 위한 교육활동보호 법률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위촉된 변호사는 2024년 3월 1일 기준 33명이다. 이들은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아동학대 피신고 교원, 특이(악성)민원 대상 교원 등에 대하여 법률 상담을 지원하고 조사나 수사를 받을 때 동행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33명의 변호사로는 인천 관내 학교와 교원을 모두 지원하기에는 물리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법률지원단의 인적 자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했을 때 법률 상담과 자문을 받을 수 있는 1학교 1변호사제인 ‘우리 학교 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학교가 법무법인과 계약을 맺고 교권 침해 판단 사안이 발생하면 절차적 상담을 지원하는 것이다. 학교와 법인이 계약을 맺음에 따라 중간에 교육청의 연결이나 중재 없이 교사와 변호사가 1대1 매칭이 되기 때문에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때 교사가 직접적으로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학교변호사 제도에 대한 교원들의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 학교변호사 제도는 비단 교육활동 침해에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학교폭력이나 성폭력, 아동학대 사안 등에서도 변호사의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활동 보호에만 국한하여 학교변호사 제도를 도입하기보다는 법률지원이 필요한 다양한 분야를 통합한 형태로 제도를 설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학교의 업무를 경감해주는 차원에서 학교와 법무법인을 매칭하여 계약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풀을 확보하는 것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과 보호자의 특별교육 내실화

교육활동 침해 학생과 보호자의 특별교육은 향후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적 관점에서 내실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특별교육은 학교 자체 운영 또는 외부 특별교육이수기관에 의뢰하여 운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전문성을 갖춘 외부 기관에 의뢰하여 특별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것은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으나, 학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은 재고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생과 보호자의 특별교육이 피해를 받은 교원이 있는 학교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과연 피해교원을 위한 방식인가에 대한 문제도 있으며, 학교에 부가적인 업무를 부여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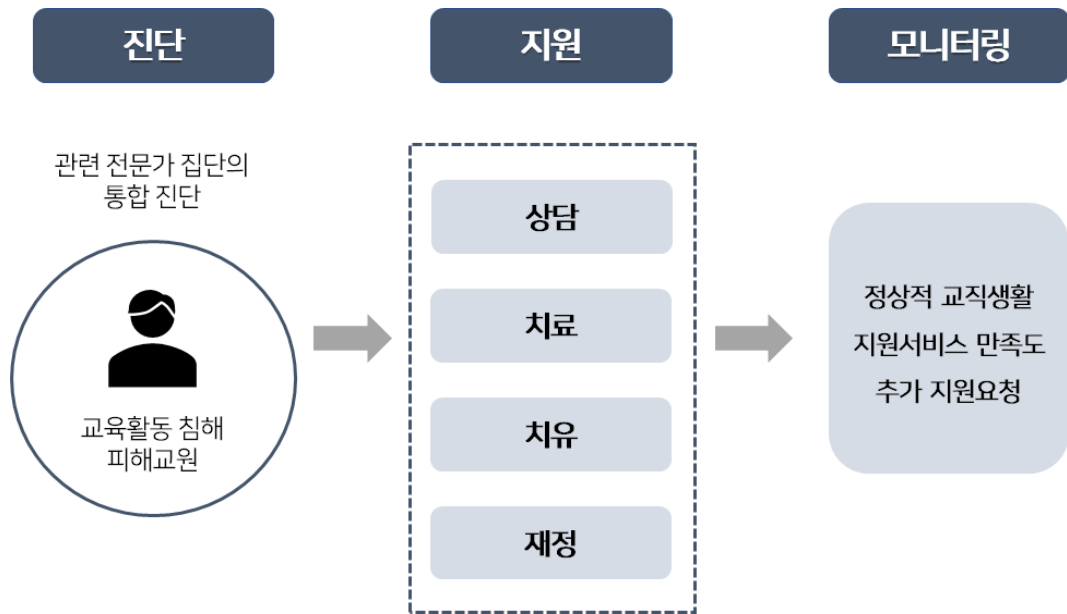
교육활동 침해 학생과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은 전문성을 갖춘 외부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며, 피해교원 및 학교와의 관계 측면과 재발 방지 차원에서도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교육활동보호담당관에서는 6개의 특별교육 이수 기관을 지정하여 교육활동 침해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별교육 내실화에 있어서 프로그램별 질

관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특별교육 이수 후에 교육활동 침해 학생과 보호자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단순히 교육 이수에 그치지 않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재발의 위험성은 없는지 등을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즉 특별교육의 내실을 강화하기 위해서 특별교육 이수 후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라.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확대

현행 교육활동 보호 정책에 대한 Borich 요구도 분석 결과에서 ‘교원보호공제 보장내역 확대’가 3순위로 도출되었다. 또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보호조치에 대한 요구도 분석 결과에서도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확대’가 3순위로 나타났다. 즉 교원들의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에 대한 지원 요구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교육활동보호담당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는 교원보호공제 보장내역 확대, 교원 치유·회복 심리상담 및 치료 지원, 다채움 치유 회복 프로그램 운영 등이 있다. 단기적으로는 피해교원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하여 개별 사업에 대한 지원 횟수나 예산의 확대 등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 사업은 대개 피해교원이 필요한 지원 서비스를 신청하여 제공받는 형태이며, 통합지원보다는 분절적 지원에 가깝다. 따라서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피해교원의 상황과 심리 상태 등에 적합한 맞춤형 통합지원 체계 구축으로의 확대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학생맞춤통합지원과 같은 체계처럼, 교육활동 침해를 받은 피해교원에 대하여 현 상태를 진단하고, 필요한 지원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며, 최종적으로는 지원 서비스 제공 이후 모니터링 체계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III-1]과 같다.



[그림 Ⅲ-1]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대상 맞춤형 통합지원 체계(안)

아울러, 피해교원의 충분한 치유와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교육활동 침해를 한 번 겪은 피해교원은 심리적인 트라우마가 심하다. 특히 학생으로부터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교원의 경우, 학생을 매일 마주해야 하는 직업 특성상 직무에 대한 스트레스가 극도로 심해질 수 있다. 심할 경우 교직을 떠나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으며, 교직에 남아있더라도 피해교원이 충분히 회복하지 못할 경우 학생들의 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피해교원이 다시 일상으로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제도적인 차원에서 일정 기간 피해교원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처럼 1박2일의 짧은 프로그램은 치유와 회복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기에 단순한 쉼의 형태가 아니라 3~6개월 정도의 장기 연수 형태로 개발하여 운영한다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2.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교원 요구 기반 신설 사업 추진

가. (예방)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색있는 교육프로그램 개발

교원들은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하여 대체로 사안이 발생했을 때의 대응과 사후지원에 대해 높은 요구를 보였다.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대응과 사후지원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 예방과 관련하여 교원들이 요구한 부분은 서술형으로 수집했던 추가 요구사항 부분이었다. 수집된 의견을 분석한 결과, 1순위로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법과 제도 마련’이, 2순위로는 ‘전체 학부모 또는 학생 대상 교육활동 보호 교육 실시’가 도출되었다. 이 두 가지 모두 예방적 차원의 방안인데, 법과 제도의 경우에는 물론 마련되어야 할 방안이지만 교육청 수준에서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예방적 관점에서 교육활동 보호 교육의 강화에 대해 제안하고자 하였다.

교육활동 보호 관련 예방교육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6조의3에 근거하여 교직원, 학생, 보호자 등 대상별로 연 1회 이상 필수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예방교육의 경우 형식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예방교육의 효과성을 확인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방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비추어 보면 효과적인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따라서 교육청 차원에서 특색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교에 보급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정규교육과정과 연계한 교과별 프로그램을 만들어 교사들의 활용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필수적으로 운영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과의 통합 또는 연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도 고려해볼 수 있다. 한편, 앞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교직경력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원 연수에서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러한 특색 프로그램은 전문성을 가진 외부 기관에 의뢰하여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며, 교육청 차원에서도 연수원, 평생학습관, 학생교육문화회관, 도서관 등에서 예방교육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때 특색있는 교육프로그램은 학생과 보호자뿐만 아니라 교사, 교장·감, 행정직원 등 주체별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나. (대응) 교원 보호시스템 강화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한 추가 요구사항에서 녹음기 보급, 휴대용보호장비, 비상벨 구축 등 교원 보호시스템 강화가 2순위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요구사항은 주로 물리적 차원의 보호시스템이라 볼 수 있다. 교실 안에서 교사를 보호해줄 수 있는 물리적인 수단이 없기에 이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추측된다. 교육활동 보호의 중요성에 비추어보면 교원을 위한 보호시스템이 강화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이 필요하다. 신설학교들은 신설 과정에서 교실 및 교무실 내, 복도 등에 비상벨을 구축하는 등 물리적인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설계하여 구축하고, 기존 학교들은 교육환경 개선의 목적으로 단계적으로 구축해나가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일부 시도에서 공무원증 케이스 형태의 녹음기를 보급했지만, 현장에서 녹음기를 사용하는 것이 불편하여 잘 사용하지 않는다는 문제(정민엽, 2024.05.16.)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공무원증 케이스 형태 녹음기 사용 시 수업시간에는 녹음기를 착용할 수 없으며, 교육활동 침해 시에만 사용할 수 있고,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라는 안내가 있었다. 또한 민원인이 학교를 방문했을 때에만 절차에 따라 기기를 반출해 사용해야 하며, 녹음기를 사용하려면 매번 대장을 적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교사들 사이에서 ‘무용론’까지 나오는 실정이었다. 즉 녹음기 사용에 대해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녹음으로 인한 인권 침해가 마치 대립되면서 녹음기 사용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녹음기 보급이 충분한 준비 과정, 예를 들어, 사전 교육과 안내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물리적 시스템이 구축되는 과정에서 교원뿐만 아니라 학교구성원 대상의 사전 교육과 안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 (사후지원) 사안 처리 이후 단위학교 모니터링 체계 구축

앞선 절에서 교육활동 침해 학생과 보호자 대상 특별교육 이수 후의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대상의 사후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제시하였다. 물론 당사자들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체계가 매우 중요하지만,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해당 학교의 구성원들에게도 상당한 불안과 스트레스를 유발하기에 학교의 공동체성 회복을 위하여 단위학교 전체 구성원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가 필요하다.

여기에서 모니터링은 구성원들의 심리정서 및 관계 회복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학생 대상으로는 학급 단위나 학년 단위로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심리정서 및 관계 회복을 도모하고, 교사 대상으로는 개인 또는 집단상담이나 전문가 초청 연수 등을 활용하여 스트레스와 불안을 해소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피해교원의 치유 및 회복과 교육활동 침해의 재발 방지에도 기여할 것이다.

IV

결론 및 제언

1. 결론
2. 제언

IV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교육활동 보호의 중요성에 비추어 교육활동보호담당관 및 교육활동 보호 정책에 대한 교원의 인식과 요구를 살펴보고, 향후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의 중기 사업 추진 방안을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교원의 인식과 요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 결과를 통해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의 중기 사업 추진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설문조사의 주요 내용별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첫째, 학교 내 교육활동 침해의 심각성에 대해 응답 교원의 약 55.4%(934명, ‘심각하다’와 ‘매우 심각하다’ 응답자 합계)가 심각하다고 응답하였다. 5점 척도에서는 평균 3.52로 나타나 교육활동 침해의 심각성에 대한 교원의 인식은 보통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교육활동 침해 주체로는 학부모(53.0%)가 학생(41.6%)보다 많았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M=4.20)’이 가장 높게 나타나 이에 대한 교원들의 우려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교육활동보호담당관 및 현행 교육활동 보호 정책과 관련하여 응답 교원의 약 59.1%(995명)가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을 알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직위별 응답 결과에서 교장·교감의 경우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을 알고 있는 경우가 95%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교사는 약 53.6%만이 알고 있다고 응답한 점이다.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을 알고 있는 교원을 대상으로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의 효용성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 5점 척도에서 평균 3.55로 나타나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의 효용성은 보통 수준이었다. 그러나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의 지속적 운영에 대한 필요성은 평균 4.21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현 정책에 대한 요구도 분석 결과, 교원들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때의 대응과 사후지원의 강화에 대해서 높은 요구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반해, 예방적 차원에 해당하는 중점 과제들은 상대적으로 요구도가 높게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보호 관련 정책에 대한 요구 분석 결과, ‘교사들의 교육활동 전념을 위한 행정업무 경감 및 업무 정상화’, ‘교사의 안정과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활동 대체 인력풀 활성화’, ‘교육활동 침해 학생과 보호자의 특별교육 내실화’,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확대’가 최우선 요구사항으로 도출되었다. 해외사례 및 타 시도교육청 정책에 대한 요구도 분석 결과, 교원들은 ‘학교변호사 제도(46.6%)’를 가장 많이 요구하였다. 이어 녹음기 보급, 휴대용보호장비, 비상벨 구축 등 ‘교원 보호시스템 강화(16.9%)’, ‘정서행동위기학생 및 문제행동학생 지도를 위한 전문인력 지원(14.3%)’ 등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다. 이외에 추가적인 요구사항(서술형)으로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법과 제도 마련(12.6%)’이 1순위로 나타났고, ‘전체 학부모 또는 학생 대상 교육활동 보호 교육 실시(11.2%)’, ‘교권침해 학부모 또는 학생 처벌 및 재발 방지 교육 실시(10.2%)’ 등의 순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설문조사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의 중기 사업 추진 방안을 크게 2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첫 번째 방안은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의 현행 중점 과제 강화 방안으로, 1) 특이(악성)민원 사안 대응 강화, 2)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 강화, 3) 교육활동 침해 학생과 보호자의 특별교육 내실화, 4)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확대를 제안하였다. 두 번째 방안은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교원 요구 기반 신설 사업 추진 방안으로, 1) (예방)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색있는 교육프로그램 개발, 2) (대응) 교원 보호시스템 강화, 3) (사후지원) 사안 처리 이후 단위학교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해 도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한 정책 및 사업 추진 시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대응과 사후지원에 더욱 중점을 두어야 한다. 설문조사 결과, 교원들은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하여 사안에 대한 대응과 사후지원에 높은 요구를 보였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피해교원의 치유·회복 지원과 교육활동 침해 학생 또는 보호자에 대한 재발 방지 교육 등이 내실있게 이루어지는 것은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고 교원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기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대응 및 사후지원 관련 정책이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속적으로 교원의 인식과 요구를 파악하여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새로운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요구된다. 사회가 다변화되면서 학교에 다양한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 행위나 민원도 그 방식은 유사할지라도 과거와 다르게 내용이 조금씩 변화한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현장을 관찰하여 교육활동 침해나 민원에 대한 실태 분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정례적으로 교원의 인식과 요구를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교원들에게 “교원을 존중하며 보호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준다는 점에서도 필요한 과정이라 생각된다.

2. 제언

가. 정책 제언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3가지의 정책 제언을 제시하였다.

첫째,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시적 조직이 아닌 공식 조직으로 재편해야 한다.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교육활동 보호의 중요성에 비추어보면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이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조직인가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대개 조직의 한시적 운영은 공식조직에서 조직구조의 특성상 다루기 어려운 전문적인 사안을 시급히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교육활동 보호는 사실상 문화적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이어져야 하는 속성을 가진다. 3년간의 한시적 운영으로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문화를 조성하기가 어렵다. 현재 조례가 제정되어 2026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어야 하지만, 3년 후에는 교육활동 보호 전담기구를 공식조직 내 재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교육활동보호담당관에 대한 교원의 낮은 인지도를 고려하여 교육활동 보호담당관 및 교육활동 보호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자신들을 보호하는 전담기구와 정책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교원의 사기를 진작할 수 있다. 또한 학생과 학부모 등 다른 구성원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함으로써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하여 정책 재구조화가 요구된다. 현재 교육활동보호담당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은 중점과제 4가지에 예방, 대응, 사후지원이 섞여 있어 분절적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으며, 백화점식 나열 형태보다 통합하여 지

원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컨대, ‘거버넌스 구축 및 환경 조성-예방-대응-사후지원’과 같이 일련의 체계적 접근으로 현재 사업들을 재구조화하고, 하위에 유사한 사업들을 통합하여 그 수를 줄이고 사업별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또한, 교육청 내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한 사업들을 모두 종합한 “(가칭) 인천 교육활동 보호 종합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교육활동 보호는 그 특성상 업무 경계가 모호하고, “교육활동 보호”라는 용어에 다양한 활동들이 포함될 수 있다. 이에 관계된 부서가 교육청 내에서도 다양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학교폭력 및 성폭력, 아동학대 등을 다루는 학교생활교육과, 인성교육을 다루는 초등교육과, 학부모교육을 다루는 학교·마을협력과 등을 비롯하여 거시적인 측면에서 교원의 업무를 지원하는 인천광역시교육청학교지원단 등이 관련될 수 있다. 따라서 관계 부서들과의 공식적인 협의 체계 구축을 통해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지역 내 유관기관 연계 차원에서도 관계 부서들과의 협업 체제는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한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교육활동 보호 정책 및 사업이 학교 현장과 해당 교원 등에 대하여 어떻게 구현되는지 그 과정에 대한 피드백 체계가 요구된다.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의 정책 및 사업은 수혜자가 “교원”이라는 명확한 특징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수혜자를 대표할 수 있는 인천 관내 교원단체 및 조직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 현장 교원 대상 상시 모니터링, 정례적 요구조사를 통한 상향식 정책 추진, 현장 피드백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직·간접적인 정책·사업의 평가 및 환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교육활동보호담당관뿐만 아니라 교육지원청의 사안 처리 과정 및 학교 현장에 대한 밀착 지원 노력 등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이 요구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장기적인 방향을 모색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교육활동 보호는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즉 개별적인 사안처리를 넘어 보다 근본적으로 단위학교의 교육활동 보호, 교육공동체 회복 지원 등 문화 조성 관점에서의 정책과 지원이 필요하다. 설문조사 결과에서 예방적 방안에 대한 교원의 요구는 높지 않았지만, 장기적으로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학교문화 조성에 대한 정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나. 후속연구 제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다.

첫째, 앞선 정책 제언에 기초하여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의 정책 재구조화를 위한 기초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단기간에 수행하는 현안연구이기에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의 전체 정책을 재구조화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그러나 후속연구에서 정책 제언에서 일부 제시한 것처럼, ‘거버넌스 구축 및 환경 조성-예방-대응-사후지원’과 같이 일련의 체계적 접근으로 현재 사업들을 재구조화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탐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교육청 내 교육활동 보호 관련 유사 정책 통합 및 조정을 위해 관련 사업들을 조사하여 통합하는 방향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육활동 침해를 겪은 피해교원 대상의 맞춤형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수행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체계(안)을 제안하기는 했으나, 구체적이고 현실가능한 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련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피해교원이 일상으로 돌아와 교단에 다시 서기 위해서는 충분한 치유와 회복 과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피해교원 개인에 대한 통합 진단과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교육청 내 지원서비스를 비롯하여 유관기관을 파악한 후 ‘진단-지원-사후모니터링’에 따른 일련의 체계를 구축해나가는 기초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학교급별, 교직경력별 등 교원의 배경변인별 맞춤형 정책 마련을 위한 질적 요구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배경변인별로 세밀한 분석을 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또한 설문조사를 통해 교원의 요구를 분석하였기에 단편적인 정보만으로 방안을 제안한 한계도 있다. 이에 본 연구의 한계를 극복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설문조사 결과에서 유치원 및 특수학교 교사들의 요구사항과 저경력 교사들의 요구사항 등이 다른 집단의 요구사항과 다소 상이하였는데, 후속연구에서는 심층면담을 통한 질적 요구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 교육부(2022.12.27.).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 김경혜(2023).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학교 구성원의 인식 조사 분석. 제주융합과
학연구원 제주교육정책연구센터.
- 김도기, 문영진, 문영빛, 권순형(2016). 초등학교 학교장의 직무역량 요구분석. 교
육행정학연구, 34(5), 437-462.
- 김소현 외(2022).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인식 분석 및 역량 강화 방안 연구 -
학생, 학부모, 교원을 중심으로. 경기도교육연구원.
- 이지혜 외(2023). 교원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 대전교육과학연구원 대전교육
정책연구소.
-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담당관(2024). 2024 인천 교육활동보호 시행계획.
- 인천교사노동조합(2024.07.15.). 故 서이초교사 1주기, 인천교사 인식변화 설문
결과 보도자료.
- 정민엽(2024.05.16.). 교사 공무원증 녹음기 “현장 사용 제약 많아” 불만 속출.
강원도민일보,
<https://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1244176>에서
2024년 11월 25일 검색.
- 정소민 외(2022). 학교구성원의 교육활동(교권) 보호 인식에 관한 탐색적 연구.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
- 조대연(2009). 설문조사를 통한 요구분석에서 우선순위결정 방안 탐색. 교육문제
연구, 35, 165-187.

부 록



설문조사지

교육활동보호담당관 및 교육활동 보호 정책에 관한 교원 인식 조사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에서는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중기 사업 추진 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활동 보호 및 관련 정책에 관한 인천 관내 교원의 인식 및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응답 내용은 통계적으로 분석·처리되므로 학교 및 개인 정보는 절대 노출되지 않으며 응답 결과는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교육활동과 업무로 바쁘시겠지만, 교육활동 보호를 통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하여 문항에 성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9월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장 올림

조사와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 :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 연구위원 문영진
- 문의 : (032) 420-8212

PART. 1

기초조사

※ 다음은 선생님의 기본 인적사항 조사입니다. 해당하는 것에 V표 하십시오.

1. 학교급

- ① 유치원
- ② 초등학교
- ③ 중학교
- ④ 고등학교
- ⑤ 특수학교
- ⑥ 기타(각종학교 등)

2. 성별

- ① 남
- ② 여

3. 직위

- ① 교장
- ② 교감
- ③ 수석교사
- ④ 교사

4. 담임 여부

- ① 담임
- ② 비담임(부담임 포함)

5. 교직경력

- ① 5년 이하
- ② 6년 이상 10년 이하
- ③ 11년 이상 15년 이하
- ④ 16년 이상 20년 이하
- ⑤ 21년 이상 25년 이하
- ⑥ 26년 이상 30년 이하
- ⑦ 30년 이상

PART. 2

교육활동 침해 실태 및 인식

※ 다음은 교육활동 침해 실태 및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선생님의 인식을 확인하기 위한 문항입니다. 해당하는 것에 V표 해주세요.

※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서 정의하는 공무 및 업무 방해, 모욕 및 명예훼손, 상해 및 폭행, 성적 굴욕감 및 혐오감, 성폭력 범죄, 손괴(어떤 물건을 망가뜨림), 정당한 교육활동의 부당한 간섭, 정보통신망 이용 불법 정보 유통 등을 뜻합니다.

6. 선생님께서는 학교에서 교육활동 침해가 어느 정도로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심각하지 않다 ② 심각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심각하다 ⑤ 매우 심각하다

7. (1번에서 ④, ⑤ 응답자) 학교 교육활동 침해의 주체는 주로 누구입니까?

- ① 학생 ② 학부모 ③ 기타

8. 교육활동 침해 경험이 있으시다면 침해 주체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세요.

(서술형, 선택 응답)

예) 침해 주체 : 학생 및 학부모 등
 예) 침해 내용 : 공무 및 업무 방해, 무고, 상해와 폭행, 협박, 명예훼손, 손괴, 성적 굴욕 또는 혐오 행위, 성폭력 범죄, 불법정보 유통,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 배포,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 또는 제한 등

9. 다음은 교육활동 보호 교육 및 침해 경험에 대한 문항입니다. 해당하는 것에 V표 해주세요.

문항	예	아니오
1. 최근 1년 이내 “교육활동 보호” 관련 교육 또는 연수를 받은 적이 있다.	①	②
2. 최근 1년 이내 “교육활동 침해” 사례를 듣거나 본 적이 있다.	①	②
3. 최근 1년 이내 “교육활동 침해”를 한 번 이상 받은 적이 있다.	①	②

13.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은 2024년 1월에 설치되어 3년간 운영되는 한시조직입니다. 선생님께서는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의 지속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4. 다음은 「2024 인천 교육활동보호 시행계획」의 중점 과제입니다. 중점 과제별로 수행도와 중요도를 V표 해주세요.

나는 다음의 중점 과제가 잘 수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수행도)					항목	나는 다음의 중점 과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미래-중요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1. 시교육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3. 교원보호공제 보장내역 확대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4. 교육활동보호 현장자문단 운영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5. 교육활동 침해 특별교육 이수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6. 교육활동보호 법률지원 강화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7. 교원 치유·회복 심리상담 및 치료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8. 원스톱 지원 신청 홈페이지 운영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9.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사안 운영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0. 교권침해 관련 특이(악성)민원 사안 대응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1. 찾아가는 교육활동보호 교실 운영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2. 교육활동보호 역량강화 연수 운영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3. 교육활동보호 교육자료 개발·보급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4. 다채움 치유 회복 프로그램 운영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5. 교육공동체 교원온침표 공모사업 운영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6. 교육활동보호 상호존중 주간 운영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7. 교원 존중 문화 조성 사업 추진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8. 교육활동보호 정책 협의체 운영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9. 교육활동보호 소통 간담회 운영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0. 교육활동보호 홍보 자료 제작 배부	①	②	③	④	⑤

PART. 4

교육활동 보호 관련 정책에 대한 요구

※ 다음은 교육활동 보호 관련 정책에 대한 선생님의 요구를 확인하기 위한 문항입니다. 해당하는 것에 V표 해주세요.

15. 다음은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보호조치에 대한 수행도와 중요도를 확인하는 문항입니다. 항목별로 수행도와 중요도를 V표 해주세요.

나는 다음의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보호조치가 잘 실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수행도)					항목	나는 다음의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보호조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미래-중요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1. 교사들의 교육활동 전념을 위한 행정업무 경감 및 업무 정상화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 교사의 안정과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활동 대체 인력풀 활성화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3. 교권과 학생인권이 상호 보장되는 인권 친화적이고 민주적인 학교 문화 조성 노력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4.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 강화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5. 학교 및 지역사회 이해가 높은 갈등 조정 전문 인력풀 구축 및 정기적인 질 관리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6. 아동학대, 학생인권 관련 적절한 대처를 위한 판례와 매뉴얼 보급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7.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전문성 강화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8. 교육활동 보호 관련 교육청과 국가의 홍보 및 노력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9. 교육활동 침해 학생과 보호자의 특별교육 내실화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0. 교육활동 침해 교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확대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1. 교육활동 침해 시 대응을 위한 One-stop 시스템 및 긴급 지원팀 확대 운영	①	②	③	④	⑤

16. 다음은 타 시도교육청 및 해외 국가들의 교육활동 보호 관련 정책 및 사업입니다. 이들 중 인천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담당관에서 추진하기를 희망하는 사업은 무엇입니까? 3가지를 순서대로 선택해주세요. (3개 선택)

1순위 () 2순위 () 3순위 ()

- ① 학교변호사 제도(1교 1변호사제 “우리학교변호사”, 1명의 변호사가 5~6개 학교 담당)
- ② 교원 보호시스템 강화
(공무원증 케이스 형태의 녹음기 보급, 휴대용보호장비, 비상벨 구축 등)
- ③ 권역별 교육활동보호센터 운영(전담 변호사 권역별 배치)
- ④ 교육활동 보호 인식 제고를 위한 공익 광고 제작 및 방영
- ⑤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학생자치규정 제정
- ⑥ 학부모의 책무 등을 규정한 학부모 선언문 공표
- ⑦ 수업방해 예방 선도학교 운영
(사전 예방 중심 학교 차원의 긍정적 수업 행동 지원 프로그램 적용)
- ⑧ 정서행동위기학생 및 문제행동학생 지도를 위한 전문인력 지원
- ⑨ 학부모 활동가(학교와 학부모 간 관계 개선을 위해 학부모 활용, 학교와 의사소통 중에 불만을 가진 학부모에게 해당 학교에서 활동하고 있는 학부모가 조정 역할 수행)
- ⑩ 교사 일상 도우미 채용제도 및 학급 조교 배치 프로젝트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행정업무 경감)

17. 교육활동보호담당관에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추진하기를 희망하는 사업 또는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추가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기술해주세요. (서술형, 선택 응답)

조사에 참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중기 사업 추진 방안 연구

발행일 2024년 12월
발행인 인천광역시교육감 도 성 훈
발행처 인천광역시교육청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9(구월동) (우)21554
<http://www.ice.go.kr>
032-423-8232
I S B N 978-89-6960-104-9 (비매품)

※ 이 책의 저작권은 인천광역시교육청에 있으며 일부 또는 전부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